

2025년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환경부 소관
- 고용노동부 소관

2025. 4.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5. 4. .

환경노동위원회

I. 소관부처 회부 추가경정예산안

1. 환경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 환경개선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2. 고용노동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세출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세출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년 4월 21일

2. 회부일자

- 2025년 4월 21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25. 4.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회부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5. 4. 25.)

상정, 축조심사 및 수정가결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25. 4. 25.)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및 수정가결

Ⅲ. 제안설명의 요지

1. 환경부

(제안설명자 : 환경부장관 김완섭)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5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부 소관 사업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❶재해·재난 대응, ❷통상·AI 경쟁력 강화, ❸민생 지원을 위한 12.2조원 규모의 필수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환경부는 산불 피해의 조속한 회복과 산불·싱크홀 등 재해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으로 총 1,7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추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속한 산불 피해의 복구와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영남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로 발생한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립공원 내 산불 진화 장비 확충을 위해 국립공원공단 출연사업비를 7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최근 지리산 및 주왕산 산불 발생 시

진화에 투입된 노후 헬기를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싱크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5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환경부의 추경예산이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고용노동부

(제안설명자 :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김민석)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통상환경의 급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총 12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9개 사업, 총 2,113억원입니다. 회계에 3개 사업, 597억원을 기금에 6개 사업, 1,5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재난,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기업에 대해

고용둔화대응 지원을 신설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하였습니다.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內 「고용둔화대응지원」 신설 +300억, 고용유지지원금 +111억(2.4만명 → 3만명, +6천명)

경기침체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중장년의 맞춤형 훈련 및 장려금도 보강하였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54억(10만명 → 10.7만명, +7천명),
중장년 경력지원 +43억(910명 → 2,000명, +1,090명)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43억(2,800명 → 7,500명, +4,700명)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대지급금 지원 인원을 1만명 확대하고,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용자도 증액하였습니다.

※ 대지급금 +819억(10.5만명 → 11.5만명, +1만명)
저소득근로자생활안정자금용자 +149억(3.7만명 → 3.9만명, +2천명)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용자 +66억(한도상향, 이율 인하, 자녀양육비신설)
신용보증대위변제 +330억

정부는 일자리 안정과 민생 현안에 중점을 두고 현장의 시급한 소요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V.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 환경부 소관 】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 및 기본 방향

정부는 산불대응 및 통상·AI 지원 등을 위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경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선별하여 총 12.2조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규모는 재난·대응 3.2조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4조원, 민생 지원 4.3조원, 기타(국채이자, 주요행사 개최 등) 0.2조원임.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최근 영남지역의 대형산불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정부의 재해·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둘째, 전례 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세 피해·수출기업의 부담 경감과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할 계획임.

셋째, 내수 회복 지연으로 서민·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임.

2.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지출 12.2조원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금번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1.4조원을 지원하고, AI 감사카메라·드론, 헬기·진화차량 도입 등 정부의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를 위해 1.7조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항시설의 안전시설 보강과 싱크홀(지반침하 또는 땅꺼짐)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하수관로·도로의 조기 개보수에 0.2조원을 지원할 계획임.

둘째, 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한 관세 피해 관련 정책금융과 수출바우처 확대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2.1조원을 지원하고, 고성능 GUP 1만장 확보, 고급인재 양성 2배 확대 등 AI 생태계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1.8조원, 또한 반도체 등 첨단전략사업 분야 필수 인프라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0.5조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셋째,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50만원 크레딧 지원과 정책자금을 확충하는 등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에 2.6조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매출 신장을 위해 ‘상생페이백’ 신설 등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에 1.6조원, 저소득 근로자와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자금 확대를 위한 취약계층 생활안전 지원에 0.2조원을 지원할 계획임.

【 참고자료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기본 방향	총 12.2조원	
	◇ 우리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①재해·재난 대응, ②통상·AI 대응, ③민생 지원 등 3대 분야 집중 투자	
주 요 내 용	① 재해·재난 대응	+3.2조원*
	▶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	1.4조원
	▶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	1.7조원
	▶ 노후 SOC 개량 등 안전투자	0.2조원
	② 통상 및 AI지원	+4.4조원*
	▶ 통상리스크 대응(관세, 공급망, 고용불안)	2.1조원
	▶ AI 생태계 혁신	1.8조원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0.5조원
	③ 민생 지원	+4.3조원*
	▶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2.6조원
	▶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	1.6조원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0.2조원
	④ 기타(국채이자, 주요행사 개최 등)	+0.2조원

* 억원 단위로 산출한 규모(표에서 제시된 하부 카테고리(천억원 단위) 합과 일부 차이)

3.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총괄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세입 추경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753억원 증액된 7조 5,22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추경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753억원(1.4%) 증액된 13조 1,592억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총수입-총지출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도 예산		증 감 (B-A)	%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안(B)		
☐ 세입	70,476	70,476	73,468	75,221	1,753	2.4
☐ 세출	125,060	125,060	129,839	131,592	1,753	1.4

자료 : 환경부

나. 세입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세입 추경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753억원 증액된 7조 5,221억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세입 추경예산안(회계별)]

(단위 : 억원)

구 분	‘24예산		‘25예산		증 감 (B-A)	%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합 계	70,476	70,476	73,468	75,221	1,753	2.4
▪ 자체세입	13,410	13,410	13,158	13,158	-	-
◦ 재산수입	492	492	459	459	-	-
◦ 경상이전수입	10,540	10,540	9,896	9,896	-	-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43	43	23	23	-	-
◦ 수입대체경비수입	17	17	12	12	-	-
◦ 관유물매각대	7	7	130	130	-	-
◦ 융자원금회수	2,311	2,311	2,638	2,638	-	-
▪ 세계잉여금 이입액	409	409	483	483	-	-
▪ 일반회계 전입금	56,657	56,657	59,827	61,580*	1,753	2.9

* (일반회계 전입금) 법정전입금(3조 4,741억원)** + 추가 전입금(2조 6,839억원)

** (법정전입금) 교통·에너지·환경세(15조 1,048억원) × 23%

자료 : 환경부

다. 세출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12조 9,839억원 대비 1,753억원(1.4%) 증가한 13조 1,592억원으로 편성되었음.

(1) 회계별 현황

회계별로 살펴보면, 환경개선특별회계는 2025년도 본예산 4조 8,994억원 대비 1,197억원(2.4%) 증가한 5조 19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회계는 2025년 본예산 2조 5,967억원 대비 556억원(2.1%) 증가한 2조 6,523억원으로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음.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회계별)]

(단위 : 억원)

구 분	‘24년 예산		‘25년 예산		증 감	
	본 예산	추경	본 예산 (A)	추경안 (B)	(B-A)	%
합 계	125,060	125,060	129,839	131,592	1,753	1.4
◦ 일반회계	22,091	22,091	22,047	22,047	-	-
◦ 환경개선특별회계	52,945	52,945	48,994	50,191	1,197	2.4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0,670	30,670	32,007	32,007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8,974	18,974	25,967	26,523	556	2.1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80	380	824	824	-	-

자료 : 환경부

(2) 부문별 현황

부문별로 살펴보면, 물환경 부문 556억원, 자연환경 부문 77억원, 환경일반 부문 1,120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외 부문에선 변동사항 없음.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부문별)]

(단위 : 억원)

구 분	‘24년 예산		‘25년 예산		증 감 (B-A)	%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추경안 (B)		
합 계	125,060	125,060	129,839	131,592	1,753	1.4
◦ 물환경	38,824	38,824	42,148	42,704	556	1.3
◦ 수자원	21,995	21,995	21,878	21,878	-	-
◦ 자원순환및환경경제	10,537	10,537	11,986	11,986	-	-
◦ 기후대기및환경안전	39,950	39,950	40,321	40,321	-	-
◦ 자연환경	8,360	8,360	7,883	7,960	77	1.0
◦ 환경일반	5,298	5,298	5,454	6,574	1,120	20.5
◦ 물류등기타	96	96	169	-	-	-

자료 : 환경부

(3) 세부사업별 현황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3개 세부사업인 하수관로정비, 국립공원공단 출연, 재해대책비 사업에서 총 1,753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사업비 증액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싱크홀(지반침하 또는 땅꺼짐) 피해 예방을 위해 싱크홀(지반침하 또는 땅꺼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556억원을 하수관로정비사업에서 증액하였으며, 국립공원의 산불 초동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유사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노후 헬기 교체와 고성능 산불진화 차량 추가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위해 국립공원공단 출연사업에서 77억원을 증액하였음.

마지막으로 금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와 지역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재해대책비 사업에서 폐기물 처리비용 1,120억원을 증액하였음.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세부사업별)]

(단위 : 억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2024년		2025년		증감 (B-A)	%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추경안 (B)		
합 계		15,611	15,611	18,991	20,744	1,753	9.2
하수관로 정비	▪ 싱크홀, 하수범람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하수관로 정비, 저류시설 설치 등 하수도 인프라 확충	12,816	12,816	16,264	16,820	556	3.4
국립공원 공단출연	▪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립공원공단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수지차 출연	2,295	2,295	2,227	2,304	77	3.4
재해 대책비	▪ 자연재해 피해 지역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 등 재해대책비 지원	500	500	500	1,620	1,120	224.0

자료 : 환경부

II. 검토의견

1. 환경개선특별회계

(1) 국립공원공단출연(1831-306)

가.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국립공원공단출연’(1998~, 출연) 사업은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립공원 환경관리 및 공원관리장비운영 등 공원 운영비, 동·식물 서식 현황 조사 등 공원자원관리, 대국민 편의시설 등 탐방시설운영 및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에는 2,227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303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본예산보다 76억 5,000만원(3.4%)이 증액됨.

[2025년도 국립공원공단출연 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제1회추경(B)	(B-A)	(B-A)/A
□ 국립공원공단출연	229,518	229,518	222,728	230,378	7,650	3.4
▪ 헬기도입	2,500	2,500	500	7,400	6,900	1,380
▪ 고성능산불진화차량 확충	1,516	1,516	-	750	750	순증

나. 헬기도입사업: 적기 사업 완료를 위한 사업 관리 철저

국립공원공단출연 사업의 내역사업인 ‘헬기도입’사업은 대규모 산불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노후헬기 교체를 추진하는 사업임.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 편성한 예산은 '24년부터 사업출연금으로 추진되어온 기존 ‘공원관리헬기 도입’ 사업에 대한 증액분 69억원으로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헬기도입 사업 추경안 산출 내역]

○ 공원관리헬기 도입(교체)를 위한 증액 편성 1대 × 6,900백만원 = 6,900백만원

자료: 국립공원공단

공원관리헬기 도입사업은 '97년 도입되어 노후화된 기존 헬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비 250억원(사업출연금)을 기반으로 추진되던 사업으로, '24년 예산에 이 중 25억원을 반영하여 조달청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미응찰로 유찰된 바 있음.

[교체 대상인 노후헬기 정보]

도입연도	기종명	제조사	구매비용	주용도	헬기기령	노후화율*
1997	KA-32T	카모프	2,982백만원 (러시아경협차관)	산불진화 공중순찰 등	28년	74.3%

*최대 운항 가능 시간(6,000시간) 대비 4,460시간(74.3%) 운항

자료: 국립공원공단

[2024년 노후헬기 교체사업 진행 경과]

- '24. 2월~4월 : 국립공원 헬기 제작·구매 계획(안) 수립
- '24. 4. 29.~30. : 사업설명회 개최
- '24. 5월~7월 : 규격심의회 개최 및 헬기 규격 확정
- '24. 8. 5.~16. : 조달청 긴급공고 협의 및 계약의뢰
- '24. 8. 21. ~ 10. 8. : 사전규격공고 및 긴급공고(총 250억원)
- '24. 10. 8. : 1회 유찰 (제작사측에서 제작단가를 이유로 미응찰)
- '24. 10. 10. ~ 10. 22. : 재공고 입찰
- '24. 10. 22. : 2회 유찰 (미응찰)

자료: 국립공원공단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전체 사업비를 330억원으로 증액하고, '25년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5억원과 '24년에서 이월된 25억원 및 이번 추경안을 통하여 확보된 69억원을 합한 총 99억원으로 실효성있는 구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함.

[노후 헬기 교체사업 연도별 사업비(안)]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합계
연도별 사업비	25 74	99	132	330

*'25년의 25억원은 24년도 이월액, 5억원은 본예산 편성액, 69억원은 추경액(안)임

자료: 국립공원공단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그 편성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목적적합성, 시급성, 예측불가능성 등 일정한 요건¹⁾을 갖추어야 하는데,

동 사업의 경우, ① 본예산 편성 이후 '25년 지리산·주왕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였고²⁾, ② 본예산 편성액으로는 적기에 헬기 구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③ 기후변화로 산불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헬기도입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24년 사업추진과정에서 조달청 공고 및 재공고에도 유찰된 전례가 있는 점과 산불 대응체계 구축의 시급성 및 헬기도입사업의 전체 사업 기간이 약 3년 이상으로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³⁾, 신규 헬기의 적시성 있는 도입을 위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① 추경 집행을 통해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어야 하고(목적적합성), ②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여야 하며(예측불가능성), ③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어야 할 것임(시급성).

2)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공단 소속 헬기를 통해 '25년 산불 당시 총 334회의 답수를 통해 835,000L의 물을 투하 하였음.

지 역	비행일자	비행시간	답수횟수	물 투하량
	계	52시간25분	334회	835,000 ℓ
산청(지리산)	3.22.(토)-3.25(화), 3.28(목)-3.30.(일)	44:45	281회	702,500 ℓ
주왕산	3.26.(수)-3.27.(목)	07:40	53회	132,500 ℓ

3) 산림청과 국립공원공단의 2024년 헬기 구입 입찰공고(나라장터)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납품기한을 계약 후 1,080일 이내로 공고하고 있음.

둘째, 출연금은 보조금 사업 등과 달리 사용에 있어 재량이 부여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헬기도입 사업의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 등 잔액이 발생할 경우⁴⁾ 향후 편성될 2년차 또는 3년차의 출연금 편성액을 조정하여 이번 추경편성 금액이 편성목적⁵⁾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향후 환경부는 헬기도입 사업 전과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경 목적에 맞는 적시성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참고로 산림청에서는 '24년 말 사업예산 329억원으로 중형급 신규헬기 도입사업을 공고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와 32,727,990천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5)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재난 대응' 중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자료: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보도자료, '25.4.18., 기획재정부)

다. 고성능산불진화차량확충: 적기 도입·배치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

국립공원공단출연 사업의 내역사업인 ‘고성능산불진화차량 확충’ 사업은 대규모 산불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신규 고성능산불진화차량 도입을 추진하는 사업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 편성한 예산은 총 2대의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추가로 도입하기 위한 7억 5,000만원으로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고성능산불진화차량 확충 사업 추경안 산출내역]

○ 고성능산불진화차량 2대 × 375백만원 = 750백만원

자료: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고성능산불진화차량은 일반 산불진화차량의 담수 용량인 800L의 2.5배인 2,000L의 담수용량을 가진 산악지형에 적합한 고성능 산불진화 장비로, 국립공원공단은 '23년과 '24년 도입 사업을 통해 총 4대를 구입·운영 중임⁶⁾.

6) 다만, 기존 사업을 통하여 도입된 고성능산불진화차량은 1대당 7억 5,800만원이 소요된 대형 수입기반 차량으로, 이번 추경안을 통하여 도입하려는 중형 고성능산불진화차량과는 상세 제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도입예정인 고성능산불진화차량과 일반산불진화차량 주요 제원
비교7)]**

구 분		고성능 산불진화차	일반 산불진화차
사 진			
새시(모델)		기아 K-351C(군용 소형전술차량)	현대 포터 등(1.0ton)
승차인원		4인승	3인승
제 원	크 기	6,400mm×2,195mm(폭)×2,690mm(높이)	5,100mm×1,740mm(폭)×1,970mm(높이)
	차체 중량	7,000kg(적재: 2.9t)	3,425kg(적재: 1t)
	최저지상고	410mm	150mm
	구동방식	4WD	4WD
	물탱크용량	2,000 ℓ	800 ℓ
	타이어	395/85R20	195/70R15
	방수량	200L/min	280L/min(최대 발사거리: 30m)
특 징		직접진화(자동방수) 및 급수지원 용이	진화호스를 이용한 진화

자료: 국립공원공단

[고성능산불진화차량 도입·배치 현황]

도입연도	도입차량	배치현황	배치연도	운영인력
2023	2대	경주 국립공원 오대산 국립공원	2024	경주 6명 오대산 6명
2024	2대	설악산 국립공원 무등산 국립공원	2025	설악산 5명 무등산 7명

자료: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은 해당 차량도입을 통해 산악지형이 많은 국립공원(전체 국립공원 면적의 60%)에서의 신속한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7) 참고로 기존에 도입된 고성능산불진화차량은 벤츠 유니목(u5023)으로, 6,650mm×2,480mm(폭)×3,300mm(높이)(크기), 차체중량 15,000kg, 물탱크용량 4,000L, 방수량 2,800L/min(최대 발사거리: 70m)의 제원임.

[고성능산불진화차량 사업추진계획(안): 2025년]

- '25. 5월 : 2025년 고성능(중형) 산불진화차량 도입 계획(안) 수립
- '25. 6월 : 입찰공고 의뢰(→조달청)
- '25. 6월 ~ 8월: 사전규격공개 및 입찰 공고
- '25. 8월 : 개찰
- '25. 9월 : 제안서 평가
- '25. 9월 : 물품계약 체결
- '25. 9월 : 선금급 청구 및 지급(70%)
- '25. 12.월 : 납품 완료

자료: 국립공원공단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그 편성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목적적합성, 시급성, 예측불가능성 등 일정한 요건⁸⁾을 갖추어야 하는데,

동 사업의 경우, ① 본예산 편성 이후 '25년 지리산·주왕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였고, ② 본예산 편성액에는 관련 비용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고성능산불진화차량을 배치·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③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특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대응체계 구축의 시급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고성능산불진화차량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8)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① 추경 집행을 통해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어야 하고(목적적합성), ②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여야 하며(예측불가능성), ③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어야 할 것임(시급성).

다만, 기존 고성능산불진화차량 납품과정에서 유찰 및 납기일정 지연이 발생한 바 있으므로⁹⁾, 추가로 도입되는 차량의 적기 구입 및 배치를 위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산불진화차량 증차와 함께 화재현장에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임도(林道), 탐방로 등 관리기반시설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¹⁰⁾

따라서 향후 환경부는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확충사업 전과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해당 차량이 적기에 구입 및 배치·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9) 2024년 고성능산불진화차량 도입사업에서는 단일응찰에 따른 유찰이 1회 발생하였으며, 전쟁으로 인한 국방물자 수급증가로 인한 차체 생산 및 운송지연으로 납품기한 변경이 있었음(증 38일).

10) 참고로 산불진화임도는 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보호 및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산불대응에 특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는 임도이며, 임도에 대해서는 산불진화 자원이 투입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산불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과 임도가 바람세기를 강하게 한다는 등의 의견이 각각 있음.

(2) 재해대책비(7140-300)

가.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재해대책비’(2024년~, 보조율 50~100%¹¹⁾) 사업은 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환경기초시설(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복구비용, 국립공원 복구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5년 예산에 재난 발생시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350억원, 환경기초시설 복구비용 100억원¹²⁾, 국립공원 재해복구비용 50억원¹³⁾ 등 총 500억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500억원 대비 1,120억원(224%) 증액된 1,62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재해대책비 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제1회 추경(B)	(B-A)	(B-A)/A
☐ 재해대책비	50,000	50,000	50,000	162,000	112,000	224

11) 재난폐기물 처리 및 국립공원의 경우 100%,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50~100%로 보조율이 상이함.

12) 환경부는 영덕매립장 및 청송매립장 등 폐기물 매립시설 복구비 예산으로 28억 4,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임.

13) 환경부는 국립공원 공원시설 피해복구(29억 5,000만원), 응급복구(16억원), 산불 피해조사(4억 5,000만원) 등 50억원을 집행할 계획임.

나.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 집행 관리 철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재해대책비는 2025년 3월 울산 및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¹⁴⁾로 인해 주택 4,232동, 농업시설 2,556동¹⁵⁾, 산림은 104,000ha가 소실¹⁶⁾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 및 농업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 1,1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025년도 재해대책비 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3년 결산	'24년 본예산 (A)	'25년				
			본예산 (B)	추경(안) (C)	최종 (D=B+C)	증감 (D-A)	%
☐ 재해대책비	-	50,000	50,000	112,000	162,000	112,000	224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자치단체경상보조)	-	35,000	35,000	112,000	147,000	112,000	320
*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환경기초시설 복구비용 (자치단체자본보조)	-	10,000	10,000	-	10,000	-	-
국립공원공단 재해복구비 (법정민간대행사업)	-	5,000	5,000	-	5,000	-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¹⁷⁾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14) 2025년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울산,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31명이 사망하고, 5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15) 2025년 4월 7일 기준 피해현황(행정안전부)

16) 산림청 보도자료(2025.4.18.),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 규모 잠정 104천ha, 산림청 복구에 최선’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한 규정」별표¹⁸⁾ 등에 따라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비용을 국고 100%로 보조할 수 있음.

이번 산불로 인한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규모를 살펴보면 주택 및 농업시설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은 안동 434억 7,600만원, 영덕 419억 100만원, 청송 388억 5,300만원 등 총 1,400억원 규모이고, 여기에 공장 등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50억원¹⁹⁾을 더하여 총 폐기물 처리 재해 복구비 규모는 1,450억원으로 추정²⁰⁾됨.

[주택·농업시설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안)]

(단위: 톤, 원)

지 역	합 계		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슬레이트		기 타	
	발생량	처리비 (백만원)	발생량	단가	발생량	단가	발생량	단가	발생량	단가
합 계	1,551,790	140,000	1,406,556	-	129,266	-	4,766.5	-	11,201	
안동시	482,024	43,476	435,000	75,150	43,954	206,727	1,959	645,000	1,111	392,000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18) [별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

다. 오염물 및 잔해물 처리 및 방제비용	환경부, 해양수산부	실시 비용	국고 100%	(1) 실시비용은 인건비, 자재대, 경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포함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	------------	-------	---------	---

19)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는 공장 재난폐기물 관련 사항은 현재 입력되어 있지 않으나, 경상북도에서 추산한 물량을 토대로 관련 협회 등의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임.

- (피해현황) 경북도 자체 조사결과 65개* 업체가 피해
 - * 중앙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기업 수 및 물량은 변동될 수 있음
- (폐기물 발생량) 약 53,665톤
 - * 건설폐기물 48,665톤, 사업장폐기물 5,000톤
- (처리비) 5,000백만원
 - * 건설폐기물 3,640백만원(48,665톤 × [처리비 52,822원/톤 + 운반비 21,872원/톤])
 - * 사업장폐기물 1,360백만원(5,000톤 × [처리비 250,000원/톤 + 운반비 21,872원/톤])

자료: 환경부

20) 정확한 재해복구비 규모는 4월 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영덕군	473,656	41,901	429,566	75,150	42,938	206,727	1,152	645,000	-	392,000
영양군	30,497	3,528	26,613	76,350	568	280,954	144	645,000	3,172	392,000
의성군	114,430	11,558	95,483	75,150	17,320	206,727	647	645,000	980	392,000
청송군	444,752	38,853	414,650	75,150	23,323	206,727	841	645,000	5,938	392,000
산청군	5,255	517	4,371	75,150	871	207,098	13	645,000	-	-
하동군	38	8	-	-	37	207,098	0.5	645,000	-	-
울주군	1,138	159	873	75,150	255	330,000	10	950,000	-	-

주)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집계 자료(4.1~4.15)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기존 예산 및 이전용을 통해 330억원을 확보²¹⁾하고, 추가
경정예산안을 통해 1,12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산불로 인한 재난폐기
물을 처리할 계획임.

[재해대책비 추가경정예산안 산출 내역]

폐기물처리 재해대책비	재원마련 방안
○ 주택 농업시설 재난 폐기물 처리비용 1,400억원 ○ 공장 등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50억원	○ 추가경정예산안 1,120억원 ○ 기정예산 및 이전용 등 330억원

자료: 환경부

또한 환경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4월 9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

21) 환경부는 재해대책비 잔액 중 일부를 활용(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를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로 세목조정한 45억원과 집행잔액 185억원 등)하여 230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50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총 100억원을 이용하여 재원을 확보할 계획임.

[재해대책비 기정 예산 확보 방안]

(단위 : 백만원, '25.3.31.기준)

세부사업	목-세목	25년 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활용내역
재해대책비 (7140-300)	소 계	50,000	16,490	33,510	23,000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5,000	-	5,00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35,000	16,451	18,549	18,50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0,000	39	9,961	4,500*

주)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를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로 세목조정하여 활용 예정

자료: 환경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²²⁾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된 복구계획안(4월 말)을 바탕으로 5월 중 예산 이·전용 등을 마무리하고 6월 중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²³⁾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복구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일정(안)]

<복구계획 수립절차>	<추진 일정>
재난 발생	3월 21일
↓	
재난 대응 (산불 진화 등)	3월 21 ~ 30일
↓	
상황 종료	3월 30일
↓	
지방재난피해조사(지자체)	4월 1 ~ 8일 (NDMS 입력)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행안부·지방청·지자체)	4월 9 ~ 15일 (재해대장 작성 및 NDMS에 등록)
↓	
복구계획(안) 작성(행안부)	4월 20일(잠정)
↓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 협의 (행안부)	4월 20일 ~ 1·2주 소요(잠정)
↓	
복구계획 확정(중대본)	4월말경(잠정)
↓	
예산 편성(이·전용 등)(관계부처)	5월중(잠정)
↓	
예산 교부(지방청→지자체)	6월중(잠정)

자료: 환경부

22) 재난폐기물의 과다 산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 관련 재난폐기물 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였으며, 중앙합동조사단 조사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설명함. 동 가이드라인에는 건축물 구분에 따른 폐기물 종류 및 발생량 기준을 제시하고 고철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산출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음.

23) 지방자치단체별(안동 50억원, 의성 120억원, 청송 50억원, 영양 44억원, 산청 4.3억원, 울주 1.3억원, 영덕 추경 준비 중)로 4월 중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4월 말까지 운반·처리업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5월 초까지 작업에 착수할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89조²⁴⁾에 따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으므로, 추경 편성의 일반 요건인 목적 적합성²⁵⁾, 예측불가능성²⁶⁾, 보충성²⁷⁾, 시급성²⁸⁾, 연내 집행가능성, 산불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및 방치 시 환경에 악영향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폐기물 재해대책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은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사업은 2024년 예산현액 358억 2,500만원 중 37.8%인 132억 2,000만원만 집행되었고 218억 4,200만원이 불용²⁹⁾되었으며, 각 회계연도 말 기준 실집행률은 2022년 42.3%, 2023년 34%, 2024년 42.4%로 나타나는 등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임.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 예산이 부족하여 국비가 교부된 이후에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체결을 진행하는 등 절차가 지연되면서 실집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함.

24)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25) 법률상 명시된 사유에 부합할 것

26) 기존 본예산 편성 및 심의 시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

27) 기존 예산의 전용, 예비비 등으로 대체가 곤란할 것

28) 다음 본예산 편성 및 확정까지 기다리기 곤란할 것

29) 환경부는 2024년 재해대책비 예산이 불용된 이유에 대해, 해당 예산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된 것으로서, 2024년에는 수해 복구를 위한 130억 원 외에 큰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함.

[최근 4년간 폐기물처리 재해 복구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실집행률]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1	-	-	2,426	-	2,426	2,426 [1,157]	-	100.0 [47.7]	-	-
2022	-	-	37,546	6,081	43,627	39,600 [18,449]	-	90.8 [42.3]	4,027	-
2023	-	4,027	44,670	-	48,697	46,842 [16,540]	-	96.2 [34.0]	-	1,855
2024	35,000	-	825	-	35,825	13,220 [15,194]	37.8	37.8 [42.4]	763	21,842
2025.3.	35,000	763	-	-	35,763	16,451 [1,377]	47.0	46.0 [3.9]		

주1) 각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집행실적을 계산하고, 실집행액에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작성함

주2) 2025년에는 폭설피해로 인한 육상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 충청북도 등에 164억 5,1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음.

자료: 환경부

이처럼 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보조사업 계획, 집행 및 정산 전 과정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폐기물처리 재해 복구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① 지자체가 준비 중인 계약 과업지시서·견적서 등을 한국환경공단³⁰⁾ 등이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계약 단가 및 물량의 적정성 여부를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예산의 과다 산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② 집행단계에서는 유역·지방환경청의 현장지원반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폐기물 수거·운반·처리 현장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③ 정산시에도 준공 증빙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미집행 잔액을 즉각 반

30) 한국환경공단은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110명의 집게크레인차량 보유사업자와 협력해 산불 피해지역에 폐기물 수거장비를 투입하는 체계를 갖추었고, 공단의 가용 인력과 예산을 신속히 투입해 현장 복구작업을 지원하고 있음.

납조치³¹⁾하도록 하는 등 보조사업 준비·집행·정산 단계별 감독을 강화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향후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사업의 계약단계부터 사업집행 및 정산 전과정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1) 이를 위해서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예산 집행 및 정산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하수관로정비(1132-312)

가.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하수관로정비’(1992년~, 지자체 자본보조) 사업은 하수의 완벽한 배수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보건·위생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하수의 유출·누출을 방지하여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과 하천 수질을 개선하며, 하수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하수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시침수에 대응하는 사업임.

내역사업은 ‘도시침수대응’, ‘하수관로정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대심도하수저류시설’의 네 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하수관로정비’ 내역사업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은 2025년 본예산 1조 2,950억 6,700만원 대비 556억 4,400만원(4.3%) 증액된 1조 3,507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하수관로정비 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제1회 추경(B)	(B-A)	(B-A)/A
□ 하수관로정비	1,281,593	1,281,593	1,626,418	1,682,062	55,644	3.4
▪ 하수관로정비	935,943	935,943	1,295,067	1,350,711	55,644	4.3

나.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조속한 사업 집행 및 명확한 보조율 근거 마련 필요

최근 전국적으로 다수의 싱크홀(지반침하 또는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노후 하수관로의 조속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노후 하수관로정비 계속사업 148개소 중 38개소를 선정하여 추가 505억원, 신규사업으로 서울지역의 27개소에 대한 예산 5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참고로, 2025년도 본예산 기준, 전체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1조 2,951억원(① 계속사업 493개소 1조 2,664억원, ② 신규사업 62개소 287억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596억원(① 계속사업 132개소 2,528억원, ② 신규사업 16개소 68억원)임.

[2025년도 하수관로정비사업 본예산]

구분	전체		노후하수관로	
	개소	편성액	개소	편성액
계속사업	493개소	1조 2,664억원	132개소 (26.8%)	2,528억원 (20.0%)
신규사업	62개소	287억원	16개소 (25.8%)	68억원 (23.7%)
계	555개소	1조 2,951억원	148개소 (26.7%)	2,596억원 (20.0%)

추경예산 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8개소의 계속사업 지역은 2025년도 본예산에 연부율상 필요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지역 중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고, 서울시에 편성된 27개소 신규 지역은 서울시 지반침하 구역 정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이 선정되었음(보조율 20%).

[하수관로 정비 추경예산 편성 내역]

구분	개소	편성액	비고
계속사업	38개소	505억원	집행가능성 및 연부율 고려
신규사업	27개소	51억 4,400만원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보조율 20% 지원

(1) 계속사업 38개소(505억원)

(단위 : 백만원, %)

지자체	세사업명	'25 본예산	증감	추경안	증감률 (%)	실집행률(%)*	
						'24	'25.3
인천시	동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2차)	382	3,156	3,538	826.2	47.4	-
수원시	수원시 차집관로 정비	1,904	1,101	3,005	57.8	100.0	-
양주시	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777	3,117	3,894	401.2	-	-
의정부시	의정부시 노후 하수관로정비 2차	2,085	915	3,000	43.9	100.0	78.8
부산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3-1단계)	396	604	1,000	152.5	76.0	-
익산시	익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1,453	1,547	3,000	106.5	100.0	-

지자체	세사업명	'25 본예산	증감	추경안	증감률 (%)	실집행률(%)*	
						'24	'25.3
부산시	기장하수처리구역 분류식 관로 정비사업	2,677	2,323	5,000	86.8	100.0	-
임실군	오수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	671	1,194	1,865	177.9	100.0	100.0
구미시	구미 원평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376	624	2,000	45.3	27.5	100.0
광양시	광양읍처리분구하수관로정 비사업	183	493	676	269.4	80.4	32.7
완주군	완주과학산단 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1,845	1,155	3,000	62.6	88.6	19.0
안성시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3,141	825	3,966	26.3	-	-
제천시	서부동 및 화산동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05	544	849	178.4	-	-
인천시	23년 중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80	934	1,114	518.9	39.5	-
음성군	음성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727	427	1,154	58.7	77.2	-
구리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1,101	1,165	2,266	105.8	-	-
구례군	구례 노후 공공하수관로 보수사업	1,874	1,039	2,913	55.4	100.0	-
연천군	연천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946	2,489	3,435	263.1	100.0	-
완주군	완주군 삼례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20	269	489	122.3	65.3	-
광명시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3단계]	239	1,380	1,619	577.4	44.5	-
화순군	화순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003	1,500	2,503	149.6	100.0	100.0
경산시	동부권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605	1,097	2,702	68.3	100.0	-
문경시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오수) 정비사업(2단계)	506	1,800	2,306	355.7	100.0	-

지자체	세사업명	'25 본예산	증감	추경안	증감률 (%)	실집행률(%)*	
						'24	'25.3
창원시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2,967	2,033	5,000	68.5	-	-
안산시	안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싱크홀 예방) (2단계)	1,493	1,020	2,513	68.3	68.7	32.6
달성군	달성군 다사, 화원, 가창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	458	2,042	2,500	445.9	100.0	100.0
달성군	달성군 옥포, 현풍, 구지 노후관로 정비사업	424	1,486	1,910	350.5	100.0	-
진천군	덕산,이월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753	442	1,195	58.7	-	-
양평군	강하공공하수처리장 노후 오수간선관로정비	31	113	144	364.5	100.0	-
부산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3-2단계)	1,812	985	2,797	54.4	35.5	-
영암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056	944	2,000	89.4	100.0	-
청주시	2단계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443	1,977	3,420	137.0	0.4	1.0
고양시	고양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478	1,736	2,214	363.2	-	-
동두천시	동두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2단계)	246	1,272	1,518	517.1	-	-
인천시	서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	137	1,131	1,268	825.5	43.0	-
부산시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3단계)	1,646	894	2,540	54.3	-	-
성남시	성남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4단계)	346	3,715	4,061	1073.7	11.6	-
용인시	용인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차)	1,723	1,012	2,735	58.7	100.0	-

자료 : 환경부

(2) 신규사업 27개소(51억 4,400만원)

(단위 : 백만원)

No.	시군	세부내역	조사물량 (km)	전체보수 (km)	부분보수 (개소)	총사업비 (국고·지방비)	추경(안)
'21~'23년 지반침하 발생지(①)			136.0	17.66	1,046	34,703	6,941
1	종로구	종로구 혜화동	4.69	1.38	39	2,458	492
2	중구	중구 을지로 1가	5.62	1.62	38	2,833	567
3	중구	중구 남대문로5가	6.63	2.13	21	3,551	710
4	성북구	성북구 성북동	4.51	0.65	31	1,235	247
5	성북구	성북구 장위동	4.28	1.28	22	2,190	438
6	도봉구	도봉구 쌍문동	5.38	1.21	73	2,393	479
7	은평구	은평구 수색동	6.41	1.43	15	2,388	478
8	은평구	은평구 응암동	8.04	1.04	51	1,987	397
9	강동구	강동구 암사동	3.00	0.17	30	455	91
10	강동구	강동구 천호동	4.70	1.10	39	1,997	399
11	송파구	송파구 마천동	4.10	0.67	66	1,476	295
12	송파구	송파구 거여동	4.30	1.07	54	2,046	409
13	송파구	송파구 송파동	5.70	0.24	34	592	118
14	송파구	송파구 가락동	3.00	-	4	24	5
15	송파구	송파구 삼전동	3.40	0.20	29	497	99
16	강남구	강남구 삼성동	7.00	0.84	40	1,592	318
17	강남구	강남구 압구정동	3.00	0.24	33	586	117
18	강남구	강남구 논현동	4.10	0.10	52	407	81
19	강서구	강서구 염창동	5.30	0.27	31	615	123
20	관악구	관악구 봉천동	5.50	0.14	124	968	194
21	양천구	양천구 신월동	0.46	-	8	48	10
22	마포구	마포구 도화동	7.80	0.28	56	786	157
23	서초구	서초구 반포동	5.50	0.15	20	356	71
24	용산구	용산구 도원동	5.70	0.22	60	722	144
25	구로구	구로구 운수동	2.30	0.12	30	369	74
26	영등포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8.70	0.13	21	343	69
27	서대문구	성산로 일대(연희동)	6.88	1.02	25	1,788	358
기보수 완료·보수불가(②)			-	5.29	80	8,981	1,796
합 계(①-②)				12.37	966	25,722	5,144

자료 : 환경부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³²⁾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미 확정된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상 요건 외에도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목적적합성·예측불가능성·보충성·시급성·연내집행가능성·한시성 등이 일반적인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음.³³⁾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지반침하 또는 땅꺼짐) 현상³⁴⁾에 국민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싱크홀(지반침하 또는 땅꺼짐)의 주된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 손상 문제가 지목³⁵⁾된 바, 노후 하수관로 정비·교체를 위한 동 추경 예산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싱크홀(지반침하 또는 땅꺼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로 이용자의 통행 안전

32)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33)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요건	세부내용
①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②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③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④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⑤ 연내집행가능성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⑥ 한시성	향후 일정 기간 지속될 사업 및 신규 사업의 편성을 지양하고 한시적 재정지원 사업 위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34)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지반침하 또는 땅꺼짐)은 2,085개로, 경기(429개), 강원(270개), 서울(216개) 순임.

참고로, 최근 발생한 싱크홀(지반침하 또는 땅꺼짐) 사고는 (2025.3.) 강동구 직경 20m·깊이 20m, 규모, (2024.9.) 부산 사상구 가로 10m·세로 5m·깊이 8m 규모, (2024.8.)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가로 6m·세로 4m·깊이 2.5m 규모임.

35) '19~'24년 기준 지반침하 원인 중 하수관 손상이 46.5%를 차지

을 확보하고 하수관로의 누수차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전체 하수관로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가 전국 기준 44%를 차지하고, 장기간에 걸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특성³⁶⁾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착수해야 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하수관로 노후화율 비중]

	'23년 보급률	노후화율(b/a)	연장(a)	20년 이상 노후화(b)
<전 국>	95.4%	44.0%	172,496km	75,837km
▪ 서울	100.0%	66.1%	10,866km	7,181km
▪ 광역시	98.6%	56.2%	35,436km	19,917km
▪ 도	90.8%	38.6%	126,194km	48,738km

자료 : 환경부

다만, 동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추경예산의 취지에 따라 시급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우선하여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에 따르면, 동 추경예산 편성 지역의 기준은 노후하수관로 중 연내 예산 집행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였으나, 싱크홀(지반침하 또는 땅꺼짐) 발생 이력, 하수관로 노후도, 지하공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36)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용역 진행 - 낙찰업체 선정 - 공사 착공

설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에 배정된 27개소의 경우, 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노후 하수관로 조사³⁷⁾ 등에 근거하여 고위험군을 선정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한 바, 환경부 또한 정기적인 지반침하 고위험군 지역 조사 체계 수립이 필요해 보임.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상치 못한 지반침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편성되는 것이므로, 향후에는 본예산 중심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수관로의 결함 정도 및 개·보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추경예산이 편성된 지역 중 2024년 결산 및 2025년 3월 기준 기존 사업 예산의 실제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사업 지연 방지 노력이 필요해 보임.

계속사업 중 양주시·안성시·제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24년 및 2025년 3월 기준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된 38개소 중 17개 지역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임에 따라 추가로 편성된 예산의 이월 및 불용 우려가 있음.

37)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지반침하 특별점검 요청에 따라 2024년 자치구별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시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하수관로정비사업 '24 실적행률 50% 미만 지역]

(단위 : 백만원, %)

연번	지자체	세사업명	'25 본예산	증감	추경안	증감률 (%)	실집행률(%)	
							'24	'25.3
1	인천시	동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2차)	382	3,156	3,538	826.2	47.4	-
2	양주시	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777	3,117	3,894	401.2	-	-
3	구미시	구미 원평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376	624	2,000	45.3	27.5	100.0
4	안성시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3,141	825	3,966	26.3	-	-
5	제천시	서부동 및 화산동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05	544	849	178.4	-	-
6	인천시	23년 중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80	934	1,114	518.9	39.5	-
7	구리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1,101	1,165	2,266	105.8	-	-
8	광명시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3단계]	239	1,380	1,619	577.4	44.5	-
9	창원시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2,967	2,033	5,000	68.5	-	-
10	진천군	덕산,이월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753	442	1,195	58.7	-	-
11	부산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3-2단계)	1,812	985	2,797	54.4	35.5	-
12	청주시	2단계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443	1,977	3,420	137.0	0.4	1.0
13	고양시	고양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478	1,736	2,214	363.2	-	-
14	동두천시	동두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2단계)	246	1,272	1,518	517.1	-	-
15	인천시	서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	137	1,131	1,268	825.5	43.0	-
16	부산시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3단계)	1,646	894	2,540	54.3	-	-
17	성남시	성남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4단계)	346	3,715	4,061	1073.7	11.6	-

자료 : 환경부

또한, 신규사업으로 배정된 서울시 27개소 지역 역시 2025년도 예산 기준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도 편성되지 아니한 신규 지역으로, 2025년 4월 현재 기준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도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인바, 추가경정예산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설계·착공, 주민 협의 완료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해 보임.

셋째, 신규사업으로 배정된 서울시 27개소 지역에 대한 보조금 비율은 20%로 설정되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³⁸⁾ [별표 1]에 따르면 하수관로 정비는 광역시 30%,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60%, 일반 50%의 보조율을 설정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국고보조율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임.

서울시는 높은 재정자립도(2024년 기준 약 80%) 및 높은 하수도 보급률(100%)을 감안하여 '08년부터 하수관로 사업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지 아니하고 있어³⁹⁾ 보조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싱크홀 대책('14), 호우피해 예방대책('22) 등 정부 정책상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보조율 설정의 통일성 및 예측 가능성을 위하여 관련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거나

3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39) 참고로, 서울시는 2024년 하수관로정비사업(노후하수관로 정비) 예산으로 자체 예산 225,204백만원을 편성하여 총 168,264원(74.7%)을 집행하였고, 2025년 예산에는 195,07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지침 등을 통해 문서화 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환경부는 추가경정예산이 하수관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추가로 편성된 예산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며, 명확한 보조율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고용노동부 소관 】

1.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 및 기본방향

정부는 산불 피해복구와 통상환경 변화 등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필수소요 중심으로 12.2조원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최근 영남 지역의 초대형 산불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야기함. 이에 정부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정부의 재해·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임.

둘째, 정부는 전례 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글로벌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도 격화되는 상황임. 이에 관세 피해·수출기업의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할 계획임.

셋째, 정부는 내부 회복 지연으로 서민·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임.

2.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금번 정부는 필수소요 중심으로 12.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용으로 ①재해·재난 대응 3.2조원, ②통상·AI 지원 4.4조원, ③민생 지원 4.3조원, ④기타(국제행사, 국채이자 등) 0.2조원 편성함.

추가경정예산안 12.2조원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재해·재난 대응 관련하여, 금번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 보장 및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4조원을,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장비·인프라·기술 고도화를 위해 1.7조원을, 항공 및 노후 하수관로·도로 안전투자를 위해 0.2조원을 편성함.

둘째, 통상·AI 지원 관련하여, 관세피해 관련 정책금융 25조원 확충 및 수출바우처 2배 이상 확대를 위해 2.1조원을, 고성능 GPU 1만장 확보 및 고급인재 양성 2배 확대 등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1.8조원을,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필수 인프라·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0.5조원을 편성함.

셋째, 민생 지원 관련하여, 소상공인 대상 50만원 크레딧 지원 및 정책자금 2.5조원 확충을 위해 2.6조원을, ‘상생페이백’ 신설 등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매출 신장을 위해 1.6조원을, 저소득 근로자 및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자금 확대를 위해 0.2조원을 편성함.

【 참고자료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기본 방향	총 12.2조원	
	◇ 우리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①재해·재난 대응, ②통상·AI 대응, ③민생 지원 등 3대 분야 집중 투자	
주 요 내 용	① 재해·재난 대응	+3.2조원*
	▶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1.4조원
	▶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	1.7조원
	▶ 노후 SOC 개량 등 안전투자	0.2조원
	② 통상 및 AI 지원	+4.4조원*
	▶ 통상리스트 대응(관세, 공급망, 고용불안)	2.1조원
	▶ AI 생태계 혁신	1.8조원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0.5조원
	③ 민생 지원	+4.3조원*
	▶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2.6조원
	▶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	1.6조원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0.2조원
	④ 기타(국채이자, 주요행사 개최 등)	+0.2조원

* 억원 단위로 산출한 규모(표에서 제시된 하부 카테고리(천억원 단위) 합과 일부 차이

【 참고자료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조달 구조

구 분	비고
①가용재원 4.1조원 *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	추경재원 12.2조원
②추가 국채발행 8.1조원	

3.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1) 총괄 현황

고용노동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규모는 2,113억 원으로, 본예산 35조 3,452억 원의 0.6% 수준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97억 원(0.6%) 증액 편성되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300억(4.9%)이 증액 편성됨.

기금운용계획안 중 고용보험기금은 154억 원(0.1%) 증액,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66억 원(0.07%) 증액, 임금채권보장기금은 819억 원(13.0%), 근로복지진흥금은 478억 원(23.9%) 증액 편성됨.

[고용노동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괄]

(단위: 억 원, %)

구 분	2024년	2025년		
	본 예산	본 예산 (A)	1회추경 증액분(B)	(B/A)
총지출(A+B)	336,825	353,452	2,113	0.6
▪ 예산지출(A)	58,151	57,549	597	1.0
- 일반회계	51,306	51,469	297	0.6
- 예특회계	896	866	-	-
- 지특회계	1,839	1,229	300	4.9
- 고특회계	4,111	3,985	-	-
▪ 기금지출(B)	278,674	295,903	1,516	0.5
- 고용보험	164,058	178,066	154	0.1
- 산재보험	98,222	100,176	66	0.07
- 장애인	9,053	9,372	-	-
- 임금채권	5,431	6,285	819	13.0
- 근로복지	1,908	2,004	478	23.9

(2) 세부사업별 현황

고용노동부는 ①통상·재난 대응, ②민생지원을 중심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였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

(단위: 억원)

주요 내용	일반회계	지특회계	기금
통상·재난 대응 (+751억원)	①청년일자리창출지원 (+254억) ②중장년인턴제(+43억)	①지역산업맞춤형일 자리창출지원(+300억)	①고용유지지원금(+111억) ②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43억)
민생지원 (+1,362억원)	-	-	①대지급금지급(+819억) ②산재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융자(+66억) ③생활안정자금(융자) (+149억) ④신용보증대위변제 (+330억)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통상·재난 대응을 위하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등 5개 사업에 751억원을 편성함.

주요 내용으로 ①산불·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발생한 고용둔화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고용둔화 대응 지원 예산 300억원을, ②관세에 따른 수출 주역산업 고용충격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11억원을, ③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 대상 장려금을 확대하고 빈 일자리 채용 청년에 대한 근속 인센티

브 조기 지급을 위한 예산 254억원을, ④고용변동에 취약한 중장년층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 폴리텍 맞춤형 훈련 지원 예산 43억원을, ⑤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중장년에게 취업이 유망한 자격·훈련 분야 실무경험 제공 확대를 위한 예산 43억원을 편성함.

둘째, 민생 지원을 위해 대지급금 지급 등 4개 사업에 1,362억원을 편성함.

주요 내용으로 ①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라 체불 증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대지급금 예산 819억원을, ②저소득근로자 대상 저리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를 위한 예산 149억원을, ③산재근로자 및 유족이 긴급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 66억원을, ④ 취약근로자들이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는 대위변제 지원 확대 예산 330억원을 증액 편성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증액 사업내역]

(단위: 억원)

연번	사 업 명	'25년		주 요 내 용
		본예산	추경안 (순증)	
-	합 계		+2,113	
	① 통상·재난 대응		+751	
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079	+300	▪ 고용둔화 대응 지원
2	고용유지지원금	703	+111	▪ 지원 확대(+6,000명)
3	청년일자리창출지원	7,772	+254	▪ 지원 확대(+7,000명) ▪ 청년 근속 인센티브 확대 (+6·12개월차, 각 120만원)
4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폴리텍)	577	+43	▪ 지원 확대(+4,700명)
5	중장년인턴제	36	+43	▪ 지원 확대(+1,100명)
	② 민생 지원		+1,362	
6	대지급금지급	5,293	+819	▪ 지원 확대(+1만명)
7	생활안정자금융자	915	+149	▪ 지원 확대(+2,000명)
8	산재근로자생활 안정자금(용자)	143	+66	▪ 용자한도 상향(2→3천만원) ▪ 용자종류 확대 (자녀양육비 신설)
9	신용보증대위변제	317	+330	▪ 지원 확대(+330억)

II. 검토의견

[고용정책실]

(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56-317)

< 사업 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2006~, 자치단체 보조) 사업은 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국비를 통해 이를 지원하는 사업임.⁴⁰⁾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총 5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지원대상 산업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사업으로, 지역 맞춤형으로 고용서비스 기반 구축, 취업 연계, 기업 지원 등의 사업을 구성하여 지원받는 ①‘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과, 지역 주력산업의 원·하청간 상생 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임금·복지·훈련 등을 지원하는 ②‘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이 있음.

4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개요(지역자율선택산업 대상)]

구분	지역혁신프로젝트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지원산업	지역전략 산업, 산업구조 전환지원 * 지역 자율 선택	지역 주력산업의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산업 * 지역 자율 선택
지원대상	광역단체	광역단체 (기초단체 컨소시엄 참여가능)
지원 방식·내용	신성장 산업 중심 고용서비스 기반 구축, 취업연계, 기업지원 등	원·하청 기업 수요가 반영된 패키지 지원 (임금·복지·훈련 등)
지원규모	광역단체별 40억원 한도	광역단체별 30억원 한도

*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중앙정부에서 선정한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빈 일자리로 인한 구인난 해소 대상 산업에 대해 직업훈련, 장려금 등 중앙 일자리사업과 연계·추가 지원을 실시하는 ③‘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과, 울산·전북·전남·경남의 조선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원청·자치단체·정부의 4자 공제금액을 적립하여 지원하는 ④‘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석유화학업을 대상으로 원·하청 기업 간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패키지 지원사업(직업훈련·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⑤‘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을 각각 추진 중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개요(특정산업 대상)]

구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지원산업	빈 일자리로 인한 구인난 해소 대상 산업 ⁴¹⁾ (중앙정부 제시)	조선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석유화학업
지원대상	광역단체 (기초단체 컨소시엄 참여가능)	울산, 전북, 전남, 경남 ⁴²⁾	광역단체 (기초단체 컨소시엄 참여가능)
지원 방식· 내용	직업훈련, 근로자·기업장려금 등 중앙일자리사업과 연계·추가(PLUS) 지원	근로자·원청·자치단체·정부 4자 공제금액 적립 (각 2년간 200만원 납입, 만기시 총 800만원 수령)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패키지 지원 (직업훈련·장려금 등)
지원규모	전국 284억원 한도	전국 229억원 한도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전국 100억원 한도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2025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1,078억 6,400만원 대비 300억원(27.8%) 증액된 1,378억 6,4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B)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06,292	105,796	107,864	137,864	30,000	27.8
· 자치단체지원	94,767	94,321	98,034	128,034	30,000	30.6
· 지역고용 인프라확충	90	90	90	90	0	0.0
· 산업인자위 ¹⁾ 지원	11,040	11,040	9,345	9,345	0	0.0
· 운영비	395	346	395	395	0	0.0

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자료: 고용노동부

41) ○ '24년 기 지원대상 업종(8개*)

* 조선업, 뿌리, 반도체, 농업, 여행관광업, 항공운수, 전문과학기술

○ 「1·2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23.3월, '23.7월)」을 통해 발표한 주요 구인난 업종(10개*)

*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 「3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23.10월)」에 포함된 지역별 타겟업종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3.1월)」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업종 및 기타 업종

42) 「조선업 상생협약(2023.2.27.)」 참여 5대 조선업 원청 소재 지역

〈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면밀한 사업 설계 필요 〉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⁴³⁾ 산불 등 자연재해 발생, 석유화학산업과 같이 특정 지역의 고용·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불황⁴⁴⁾ 등으로 지역의 고용이 악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정부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예산 300억원은 이와 같은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단위 고용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통해 8개 지자체에 각각 30~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밝히고 있음.

동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건설 등 최근 경제상황으로 인해 고용이 악화되거나 둔화되고 있는 업종의 지역일자리 창출·유지 지원을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정주비·행복카드⁴⁵⁾·건강검진비·교통비 등 패키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동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사업지침에 따른 기준에 맞추어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을 설계한 후 공모에 참여하면 심사를 통해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

43) 한국일보, “트럼프 ‘상호관세 폭탄’ 결국 발동… 무역 전쟁에 세계 경제 위기”, 2025.4.9.

44) 굿모닝경제, “여수·울산·대산 ‘삼중 위기’…석유화학 침체, 지역경제까지 흔들다”, 2025.4.11.

45) 기준 금액 내에서 의료, 자기개발, 문화, 여가 등을 위하여 사용

는바, 동 추경예산안 또한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바, 추경예산안 확정 이후 각 산업별·지역별 사업 설계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다만,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계할 수 있는 사업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데, 산업의 악화 및 산업 전환에 따라 지역 내 타 업종으로 이·전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주비·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이·전직 근로자 Re-Start 패키지’,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비·행복카드·심리상담비 등을 지원하는 ‘위기 근로자 안심 패키지’, 고용둔화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정주비·교통비·문화 및 여가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새출발 청년 희망 패키지’ 등 3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바 각 자치단체들은 이를 참조하여 이와 유사한 사업을 설계·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임.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 예시]

구분	이·전직 근로자 Re-Start 패키지	위기 근로자 안심 패키지	새출발 청년 희망 패키지
지원 대상	해당 산업 악화, 사업장 폐쇄 및 산업 전환에 따라 지역 내 타 업종으로 이·전직한 근로자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	고용둔화 업종에 취업한 청년
지원 패키지	①정주비 + ②교통비+ ③기타(이주비 등)	①건강검진비 + ②행복카드 + ③심리상담비 + ④기타	①정주비 + ②교통비 + ③문화·여가 활동비 + ④기타(자기개발비, 이주비 등) 또는 ①신규인력 채용장려금 + ②청년 신입직원 교육비 + ③교통비 + ④기타(이주비 등)

추가 지원	-	고용둔화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임금 추가 지원으로 월최저임금 수준 보장	-
-------	---	--	---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추경예산안을 통해 지역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대한 충격을 완화함과 동시에 지역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동 추경예산안의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 사업은 공모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일정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면밀한 사업 설계를 통해 적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추진 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5월 중 사업 공모 및 지원 대상지역 선정을 통해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4월 현재까지 지원 대상 산업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특히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사업 설계 과정이 필수적인바 고용노동부의 사업 예시에 따르더라도 공모 과정에서 사업 설계에도 일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격적인 사업 시작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데, 지역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동 추경예산안의 편성 목적을 감안할 때 사업의 적시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대상 업종 및 지역에 대한 계획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설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추경예산안 확정 이후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따르면 동 사업 예산은 특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형태의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고용 안정화라는 동 추경예산안의 목적에 부합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중 수급 방지를 위한 면밀한 사업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임.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중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형태의 지원이 포함된 사업이며, 이들 사업의 대상 산업에는 고용노동부가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지원을 고려 중인 석유화학, 건설, 자동차 등의 산업이 포함되어 있는바, 중복 지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구체적으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대상 산업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되어 있고,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대상 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석유화학업인바, 일부 지자체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해 이미 해당 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⁴⁶⁾

또한 고용노동부는 동 추경예산안의 지원 대상 예시 중 하나로 ‘고용둔화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들고 있는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빈 일자리 업종⁴⁷⁾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운영 중으로, 지원 대상이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한정된 정부 재원의 제약 하에서 예산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다수의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사업 목적에 부합할 것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사업을 설계함에 있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타 사업을 통한 지원자 및 고용노동부의 다른 장려금 수령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지자체의 사업 공모 시에도 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사업을 제외하는 등의 방안 마련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할 필요가 있겠음.

46) 경상북도의 경우,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자동차 부품 업종에 취업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된 근로자(만 35~59세 이하)에 대해 취업일 기준 3~6개월 차에 각 100/30/30/40만원 등 최대 2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인천시는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을 통해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신규 취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 중에 있고, 전라남도는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을 통해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산업 업종 기업 근로자(만 35세~59세 이하)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 중임.

47)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2)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기금, 1045-350)

< 사업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역 >

‘고용유지지원금’(1995~, 직접수행) 사업은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과 고용안정에 기여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계획액 702억 5,500만원 대비 111억 1,300만원(15.8%) 증액된 813억 6,800만원원이 편성됨.

[2025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액		증감 (B-A)	(B-A)/A
	당초	집행액	당초 (A)	제1회 변경안(B)		
■ 고용유지지원금	71,372	70,126	70,255	81,368	11,113	15.8
· 고용유지지원금	71,372	70,126	70,205	81,318	11,113	15.8
·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비용	-	-	50	50	0	0.0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1조⁴⁸⁾에 근거하여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유지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의 20/100 이상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된 경우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휴직’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사업임.

한편,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의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개발·향상 조치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한 직업안정기관 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 등을 결정하여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된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임.

48)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구 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조정 불가피한 사유		①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②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 월 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 ③ 업종·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①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 ②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③ 업종·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고용유지 조치 이행조건	휴업	1개월 단위 피보험자 전체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후 휴업수당 등 금품 지급	사전 노동위원회 승인, 30일 이상 실시 및 휴업기간 평균임금 50% 미만 수당 지급 실시비율: ▲50% 이상 (19명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휴직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후 휴직수당 등 금품 지급	직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피보험자 20%이상)을 3개월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1개월) 이상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30일 이상 휴직 실시 후 금품 미지급 실시비율: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지원수준		일반업종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결정 (근로자별 지급)
		사업주 지급 수당 기준 ▲우선지원 2/3 ▲대규모 1/2 또는 2/3* *단축률 50% 이상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사업주 지급 수당 기준 ▲우선지원 9/10 ▲대규모 2/3 또는 3/4* *단축률 50% 이상	
지원한도 (기간)		일반업종	▲1일 6.6만원 (재직기간 중 180일)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우선지원 1일 7만원 ▲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업종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집행 필요 〉

고용유지지원금의 최근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늘어났던 지원인원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특히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큰 폭으로 지원자 수가 감소하고 있었으나, 2025년의 경우 3월 기준 계획액 중 약 20% 가량이 집행된 점을 볼 때 현재 추세로 집행되더라도 계획액이 충분히 소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유지지원금 최근 집행 추이]

(단위 : 백만원, %,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3.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지원인원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지원인원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지원인원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지원인원
유급휴업	234,751	113,127 (48.2)	64,544	190,850	125,843 (65.9)	44,136	70,223	70,053 (99.8)	35,291	70,105	15,093 (21.5)	8,488
유급휴직	312,650	307,833 (98.5)	59,616			16,441			9,520			3,314
무급	49,500	42,842 (86.5)	12,954	6,370	959 (15.1)	599	1,149	72 (6.3)	31	100	123 (123.0)	31

* 주 : 2023년부터 유급휴업과 유급휴직 계획액을 통합하여 편성하였음.

**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한편,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등 예산 편성시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 요인이 발생하여 경제에 하방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바, 정부는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101억 6,500만원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9억 4,80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음.

고용노동부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편성 근거에 대하여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경기하방 우려 업종(화학제조, 자동차제조, 1차금속제조)에 대한 증액 편성으로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해당 업종 근

로자수(2025.3. 기준 약 77만명)에 2020년 고용위기시 전체 취업자 수 감소율 약 0.8%를 고려하여 5,750명에게 지원하는 것을 예상하여 편성하였고,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2024년 이후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실적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최소 인원인 250명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고용유지지원금 편성 근거]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10,165백만원 = ①5,750명×②854천원×③2.07개월 ① 5,750명: 미국 관세부과, 경기하방 우려 업종(화학제조, 자동차제조, 1차금속제조) '25.3월 기준 근로자수(약 77만명)에 '20년 초 고용위기시 전체 취업자수 감소율(약 0.8%) 고려 ② 854천원: '25년 평균 지원단가 적용(가장 최근 단가로 설정) ③ 2.07개월: '24년 평균 지원기간 적용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948백만원 = ①250명×②1,476천원×③2.57개월 ① 250명: '24년 이후 무급 지원 실적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 인원 반영 ② 1,476천원: '25년 평균 지원단가 적용(가장 최근 단가로 설정) ③ 2.57개월: 고용위기시인 '20년 평균 지원기간 적용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사업장의 경영악화를 전제로 집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경기 하방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일시적 경제 충격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기금운용계획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15%(유급)·30%(무급)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2분기 월 평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나, 예상치 못한 급격한 경제충격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금계획안 집행 시 해당 업종·지역 경

제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요건의 설정 및 적용⁴⁹⁾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현행 제도 상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⁵⁰⁾으로 지정된 경우 지원의 수준 및 지원 한도 등이 높으므로, 경기침체로 특정 업종 또는 지역의 경제사정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보이는 경우 해당 업종 및 지역을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겠음.

49)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①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영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3.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②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 내 고용 규모 또는 비중이 높은 주된 사업주의 고용위기로 인해 관내 대규모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주가 재난 발생에 직접적이거나 주된 원인을 제공한 경우 또는 해당 사업주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따른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0)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

1.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정지·폐업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2. 제1호의 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그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의 수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청년고용정책관 · 통합고용정책국]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일반회계, 1043-301)

< 사업 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2022년~, 직접)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⁵¹⁾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⁵²⁾을 근거로 함.

동 사업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7,771억 8,100만원 대비 254억 1,600만원(3.3%) 증액된 8,025억 9,700만원이 편성됨.

51)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2)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B)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657,680	537,609	777,181	802,597	25,416	3.3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607,780	487,003	777,181	802,597	25,416	3.3
· 빈일자리창출지원금	49,900	50,606				

* 자료: 고용노동부

내역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이 2021년 일괄 종료됨에 따라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2022~2024년) 시행했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⁵³⁾

2025년부터는 지원대상 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유형Ⅰ)과 빈일자리 업종⁵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유형Ⅱ)으로 구분하였음.

53) 고용노동부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한시사업(2022~2024년)으로 실시한 바 있음.

[2024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업종	지원대상청년	지원기간	사업주지원(청년1인당)	목표인원	예산
모든 업종	취업애로청년	2년	1,200만원 = 720만원(60만원/月, 1년) + 2년차 480만원	12.5만명	6,078억원

54)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과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그리고 수산업(소관부처 추천기업만 해당) 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형 I 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취업애로청년⁵⁵⁾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등⁵⁶⁾에게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유형 II 는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18·24개월차 각 240만원)을 지원하는 것임.⁵⁷⁾

동 사업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 대비 총 254억 1,600만원(3.3%) 증액되었는데, ①기업지원금 85억 7,200만원, ②청년 근속인센티브 159억 8,600만원, ③민간 운영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8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음.

55)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등

56)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57) 고용노동부는 2024년 한시사업으로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사업을 실시한 바 있음.
(지원기간 및 수준) 취업지원금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최대 200만원) 지급

[20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본예산 대비 추경안 비교표]

구분	'25년 본예산		'25년 추경안	
유형	I유형	II유형	I유형	II유형
지원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좌동	
지원대상청년	취업애로청년	모든 청년		
지원기간	1년	2년 (사업주 1년 /청년 2년)		
사업주지원 (청년1인당)	720만원 (60만원/월, 총 1년)		⇒	
청년 지원금	-	480만원 (240만원/각 18·24개월차)		
목표인원	55,000명	45,000명	58,850명	48,150명
예산	7,772억원		8,026억원(3.3% ↑)	

* 자료: 고용노동부

①기업지원금은 기업 지원물량이 유형 I의 경우 본예산(55,000명) 대비 3,850명, 유형 II의 경우 본예산(45,000명) 대비 3,150명 확대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월별 채용인원⁵⁸⁾, 고용유지율⁵⁹⁾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음.

58) '25년의 경우 채용목표인원을 12개월로 균등분배

59) 2022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고용유지율 반영

- ① 기업지원금 : ('25) 751,031백만원 → ('25추경) 759,603백만원, **8,572백만원 증액**
 - 산출: 유형1 3,850명, 유형2 3,150명 물량 증대 <월별 계산(청년마다 지급 시기 상이) 후 합산>
 (유형1) 700,643백만원 <기존 채용자('23년, '24년 채용자 계속지원분)+'25년 신규 지원분>
 a. 기존 채용자 계속지원분 628,581백만원
 b. '25년 신규 기업지원금 72,062백만원(**4,715백만원 증액**)
 $\hookrightarrow (58,850\text{명}/12\text{개월}) \times \text{고용유지율}^* \times \text{지원단가(월 60만원)} \times \text{근속기간(월)} = 72,062\text{백만원}$
 * ▲ 고용유지율(6개월: 0.83, 9개월: 0.73) ▲ 12개월 근속 시 지원금은 차년도 집행
 (유형2) 58,960백만원 <'25년 신규 지원분>
 '25년 신규 기업지원금 58,960백만원(**3,857백만원 증액**)
 $\hookrightarrow (48,150\text{명}/12\text{개월}) \times \text{고용유지율}^* \times \text{지원단가(월 60만원)} \times \text{근속기간(월)} = 58,960\text{백만원}$
 * ▲ 고용유지율(6개월: 0.83, 9개월: 0.73) ▲ 12개월 근속 시 지원금은 차년도 집행

②청년 근속인센티브의 경우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근속기간 18개월·24개월차에 지급됨에 따라 2025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는 6개월·12개월차에도 지급되는 것으로 확대되어 6개월 근속 인센티브 지급분이 예산에 반영되어 증액된 것임.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음.

- ② 청년 근속인센티브: ('25) 0 → ('25추경) 15,986백만원, **15,986백만원 증액**
 - 산출: 유형2 3,150명 물량 증대 6개월 근속인센티브 지급 <월별 계산(청년마다 지급 시기 상이) 후 합산>
 (유형2) 청년 근속인센티브 6·12개월 각 120만원 지급(**15,986백만원 증액**)
 $\hookrightarrow (48,150\text{명}/12\text{개월}) \times \text{고용유지율}^* \times 120\text{만원} = 15,986\text{백만원}$
 * ▲ 고용유지율(6개월: 0.83) ▲ 12개월 근속인센티브는 차년도 집행

③민간위탁사업비는 지급조건⁶⁰⁾을 만족한 청년 1인당 운영기관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유형 I 은 청년 1인당 20만원, 유형 II는 청년 1인당 30만원이 지급됨.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60) (유형 I) 해당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1회차(6개월분) 지원금 지급시 20만원
 (유형 II)* 기업지원금 조건: 해당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1회차(6개월분) 지원금 지급시 20만원
 *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조건: 해당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18개월 근속하여 1차 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시 10만원

대비 신규지원 인원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음.

- ③ 민간위탁사업비: ('25) 24,750백만원 → 25,608백만원, **858백만원 증액**
 - 산출: 유형 1 20만원, 유형 2 30만원 지급
 (유형1) 18,385백만원(**385백만원 증액**)
 '24년도 사업 기지원: '24년도 12.5만명 × 20만원 × 0.5 = 12,500백만원
 '25년도 신규 지원: '25년도 **5.885만명** × 20만원 × 0.5⁶¹⁾ = 5,885백만원(**385백만원 증액**)
 (유형2) 7,223백만원(**473백만원 증액**)
 '25년도 신규 지원: '25년도 **4.815만명** × 30만원 × 0.5 = 7,223백만원(**473백만원 증액**)

〈 고용유지율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20대 후반 인구의 취업자 수가 경기 위축과 일자리 감소,⁶²⁾ 경력직 선호도 증가로 인해 코로나19 때보다 더 많이 줄어들면서, 청년층 고용 상황이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⁶³⁾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학업 활동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 3월 기준 45만5천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청년고용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⁶⁴⁾ 중소기업 특히 빈일자리 업종의 경우는 인력난이 심화되어 청년 유인책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⁶⁵⁾

61) '25년 상반기에 1회, '26년 상반기에 1회 위탁사업비의 50%씩 분할 지급하되, 사업 종료 후 지급기준에 따라 정산

62) '25.3월 기준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 0.32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 기록(고용노동부)

63)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사회 초년생인 25~29세 취업자 수는 242만명으로, 1년 전보다 9만8000명 감소했다. 분기 기준으로 2013년 3분기(-10.3만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었다.”(“알바자리도 씨가 말랐어요”...직격탄 맞은 청년구직자 ‘비명’, 한국경제,2025.4.15.)

64) ▲청년고용률은 44.5%(-1.4%p)로 11개월 연속 감소, 실업률은 7.5%(+1.0%p)로 상승세
 ▲쉬었음 청년은 '22년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
 → ('21)41.5 ('22)42.3 ('23)40.8 ('24)40.3 ('25)45.5 (3월 기준, 단위: 만명) <'25.3월, 통계청>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평균 취업 소요 기간: 11.5개월<'24.5월, 통계청>

[300인 미만 업체 빈일자리 통계]

(단위: 천개, %)

구 분		‘24.10	‘24.11	‘24.12	‘25.1	‘25.2
빈일자리수 (율)	전체	168(1.1)	159(1.0)	165(1.1)	155(1.0)	159(1.0)
	제조업	43(1.4)	41(1.4)	41(1.4)	38(1.3)	36(1.2)

* 빈일자리: 조사기준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수

** 빈일자리율: 빈일자리수 / (빈일자리수+종사자수)*100

*** 자료: KOSIS 통계자료, 통계청, '25.2월

이처럼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고용둔화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임. 따라서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과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동 사업의 지원 물량 확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런데 동 사업의 2024년 집행현황을 보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현 유형 I) 사업에서 기업지원금 1,192억 5,500만원(예산현액 대비 20.14%)이 불용되었음.

65) 인력부족률(%): 300인 미만 사업장 3.0 vs 300인 이상 1.5<24,12월,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현 유형 I) 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불용액 (율)
기업지원금(310-04)	592,380	473,125	79.87	119,255 (20.14)

* 고용노동부 자료 재구성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불용액 발생 사유는 전년도 채용자의 고용유지율이 예산 추계 당시 고려한 고용유지율보다 약 10% 정도 낮아졌기 때문인데,⁶⁶⁾

2025년 사업예산 편성 시에는 변경된 고용유지율을 반영하였으므로,⁶⁷⁾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사업예산의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임.

다만, 2022년과 2023년 동 사업의 고용유지율을 보면 1년 근속을 채우는 청년의 비율이 각각 68%, 67%로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바, 최근 경기 부진,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 고용상황이 작년보다 악화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66) 2024년 사업예산 편성시 반영한 고용유지율은 2021년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17.8월~'21년) 사업의 고용유지율로, 두 사업간 참여자 집계 방식에 차이가 있어 고용유지율에 차이가 발생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주로 하여금 청년을 채용한 후 10일 이내 채용자명단을 제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개월 고용유지 후 재직중인 청년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신청

67) '25년 예산 추계 시 6~12개월 차는 '22년 청년도약장려금 사업 고용유지율, 24개월 차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고용유지율 반영

[청년도약장려금 사업 고용유지율]

개월		6	7	8	9	10	11	12	18	24
청년도약 장려금	'22년	0.83	0.78	0.75	0.73	0.71	0.69	0.68	0.43	0.40
	'23년	0.83	0.80	0.77	0.75	0.72	0.70	0.67	-	-

* ▲도약장려금 고용유지율은 수작업한 결과로 추후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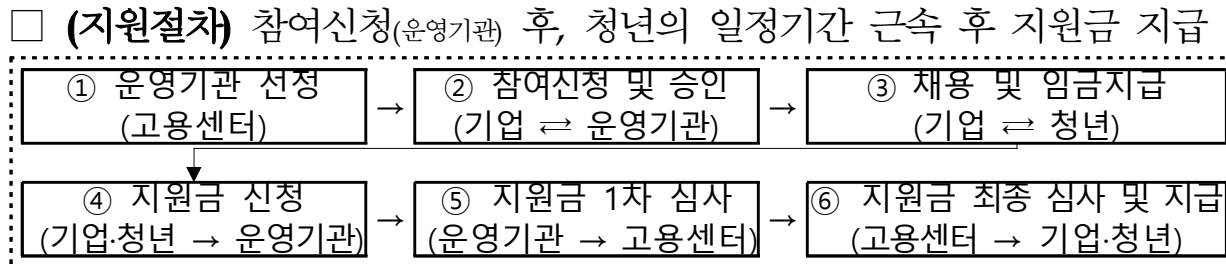
*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참여 청년의 경력 생성 및 고용 안정을 위해 동 사업의 고용유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동 사업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을 근로환경 개선, 직원 복지 증진에 쓰이도록 하는 등 제도 홍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

'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 **(개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함.
 - **(유형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2)**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만원을 지원
-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유형1)**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유형2)**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유형1)** 기업에게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2)** 기업에게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근로자가 18개월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 (18개월·24개월차 각 240만원씩 지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2) 중장년 인턴제(일반회계, 1336-305)

< 사업 개요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

‘중장년 인턴제’ 사업(2025년~, 직접)은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⁶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⁶⁹⁾를 근거로 함.

동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역사업인 일경험프로그램 중 중장년층 지원대상 사업이 이관되어 온 것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36억 4,000만원 대비 42억 9,000만원(117.9%) 증액된 79억 3,000만원이 편성됨.

68)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025년도 중장년 인턴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B)		
■ 중장년인턴제			3,640	7,930	4,290	117.9

* 자료: 고용노동부

중장년 인턴제는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 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을 선정하여, 참여기업⁷⁰⁾에서 제공하는 1~3개월 간의 유망 자격·훈련 분야⁷¹⁾ 실무수행, 직무교육,⁷²⁾ 멘토링 등을 연계하는 것으로,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150만원의 참여수당이, 참여기업에게는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수당이 지원됨.

동 사업의 운영 절차를 살펴보면, 각 권역별 고용센터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한 운영기관(민간위탁사업자)⁷³⁾이 참여자 및 참여기업을 발굴·모집하고, 이에 대해 각 권역별 고용센터는 참여자 요건 확인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이후 운영기관은 선정된 지원자를 참여기업과 매칭하여 일경험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및 현장 지도점검 등

70)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기업 단, 기술·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등은 5인 이상 기업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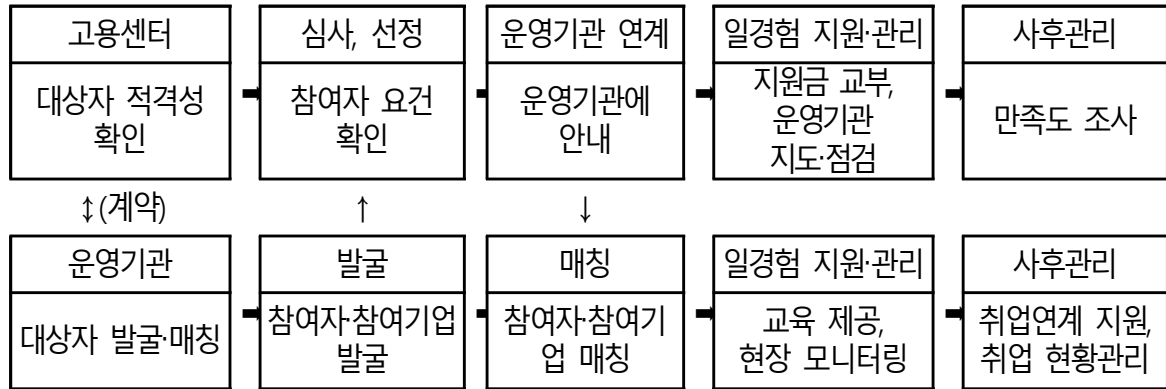
71) 전기, 소방·시설, 산업안전,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숙련이 필요한 분야

72) 소양·마인드셋, 디지털, 직무심화교육 등

73) (위탁내용) 참여자 발굴·홍보 및 참여기업 발굴·모집, 참여자 상담, 참여기업-참여자 연계·선발·관리, 교육 대행, 일경험 모니터링 및 현장 지도점검 등 사업 운영 및 사후 관리

을 수행하며, 고용센터는 지원금 교부, 운영기관 지도·점검 등을 수행함.

[중장년 인턴제 지원 프로세스]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 대비 총 42억 9,000만원(117.9%) 증액되었는데, 중장년 지원인원 확대(910명→2,000명)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것으로, ①참여자 수당 31억 3,900만원, ②참여기업 프로그램 운영수당 8억 3,700만원, ③민간위탁사업비 1억 4,400만원, ④운영비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음.

[중장년 인턴제 사업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산출근거]

- ① 중장년 인턴제: ('25) 3,640백만원 → ('25추경) 7,930백만원, **4,290백만원 증액**
- (요구) 주된 업무에서 조기 퇴직하고 자격취득, 훈련 이수 후에 경력전환을 희망하는 50대 중장년 1,090명 추가 지원에 대한 소요액
 - (산출) • 참여자 수당 2,621백만원(2025년 본예산) → 5,760백만원(**3,139백만원 증액**)
 $150\text{만원(지원단가)} \times 910\text{명(지원인원)} \times 2.4\text{개월(지원기간)} \times 0.8\text{(금년도 지급분)}$
 $+150\text{만원(지원단가)} \times 1,090\text{명(추가인원)} \times 2.4\text{개월(지원기간)} \times 0.8\text{(금년도 지급분)}$
 - 프로그램 운영 수당 699백만원(2025년 본예산) → 1,536백만원(**837백만원 증액**)
 $40\text{만원(지원단가)} \times 910\text{명(지원인원)} \times 2.4\text{개월(지원기간)} \times 0.8\text{(금년도 지급분)}$

+40만원(지원단가) × 1,090명(추가인원) × 2.4개월(지원기간) × 0.8(금년도 지급분)

• 위탁기관 기본금 91백만원(2025년 본예산) → 200백만원(**109백만원 증액**)

10만원(지원단가) × 910명(지원인원)

+10만원(지원단가) × 1,090명(추가인원)

• 위탁기관 과정 관리비 29백만원(2025년 본예산) → 64백만원(**35백만원 증액**)

5만원(지원단가) × 910명(지원인원) × 0.8(2개월이상비율) × 0.8(수료율)

+5만원(지원단가) × 1,090명(추가인원) × 0.8(2개월이상비율) × 0.8(수료율)

• 수용비 등 사업운영비 200백만원(2025년 본예산) → 370백만원(**170백만원 증액**)

일반수용비 50 + 공공요금및제세 50 + 일반용역비 50 + 사업 출연금 50

+일반수용비 100 + 일반용역비 70

〈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면밀한 분석·평가 필요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산업 전환 및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 위기 극복 필요, 50대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의 지속적 하락 추세에 따라 중장년 고용 불안정 완화를 위한 직업훈련 및 이·전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경기침체, 산업 전환 및 조기은퇴에 따른 실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 확대는 필요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의 전신인 일경험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사업 평가가 이루어진 바 없어 사업의 효과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음.⁷⁴⁾

74) 국민취업지원제도(1234-300)는 세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는데(①국민취업제도Ⅰ유형, ②국민취업제도Ⅱ유형, ③일경험프로그램), 일경험프로그램의 경우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별도의 성과지표는 관리하지 않음.

(참고) 국민취업제도 Ⅰ·Ⅱ유형: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이 결합된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에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됨.

이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소위원회에서는 기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평가 없이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동 사업이 시범사업임을 확인하고, 2025년 중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한 후 2026년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음.⁷⁵⁾

동 사업은 예산의 대부분이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참여자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가 중장년만을 대상으로 독립된 사업을 편성·운영하는 첫 해인바,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25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 시작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참여 신청자 320명·참여신청 기업 95개소⁷⁶⁾로 일경험에 대한 중장년 구직자와 기업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규모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

동시에, 중장년층의 직무능력 향상, 재취업률 제고 등 중장년 인턴제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효과를 보다 면밀히 측정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⁷⁷⁾

75) 제418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4.11.14.)

76) 현재 참여자 및 참여기업 신청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월 평균 320명에 대해 8개월 간 사업 수행 시 2,000명 이상의 수요가 예측('25. 3. 4.부터 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77) 현재 소관부서에서 중장년 경력지원제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성과지표 방안 마련 중(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1)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고용보험기금, 1155-350)

< 사업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역 >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사업(1998년~, 출연)은 국가 기간·전략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 차세대 고부가가치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고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아래 표와 같이 신중년특화과정, 훈련장려금, 전문기술과정 등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의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계획액 576억 8,900만원 대비 42억 7,200만원(7.4%) 증액된 619억 6,1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액		증감 (B-A)	(B-A)/A
	당초	집행액	계획액	제1회 변경안(B)		
■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폴리텍)	55,226	54,678	57,689	61,961	4,272	7.4
· 신중년특화과정	4,932	4,932	5,532	9,189	3,657	66.1
· 훈련장려금	4,163	3,860	4,284	4,899	615	14.4
· 전문기술과정	8,328	8,328	7,287	-	-	-
· 하이테크과정	10,150	10,150	12,150	-	-	-

· 기능장과정	625	625	603	-	-	-
· 소규모사업장훈련	1,113	1,113	1,270	-	-	-
· 여성재취업훈련	4,756	4,756	4,756	-	-	-
· 교육훈련과정운영	1,544	1,544	1,488	-	-	-
· 교과개발 및 교재발간	2,419	2,419	2,419	-	-	-
· 교육훈련직종개발	296	296	-	-	-	-
· 신기술장비확충	11,700	11,700	11,700	-	-	-
· 학과신설 및 개편	3,000	3,000	4,000	-	-	-
· 야생동물구조자업훈련	2,200	1,955	2,200	-	-	-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신중년특화과정과 훈련장려금은 기능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이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40세 이상 신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교통비 등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신중년특화과정은 3개월의 단기과정과 6개월의 장기과정으로 구분되며, 동 내역사업은 신중년특화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교육비, 실습재료비, 기숙사비 등의 훈련비로 지출됨.

훈련장려금은 훈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소정훈련일수 중 80% 이상 출석한 훈련생에게 교통비 및 훈련수당을 출석일수 등에 따라 월 최대 11만 6천원(기초생활수급자 등은 2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신중년특화과정과 훈련장려금의 개요]

구 분		내 용	
목 적		▪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신중년 적합 직종 맞춤 기술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능력 개발 및 취업을 지원	
대 상		▪ 40세 이상의 미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등	
종 류		▪ 단기: 3개월 과정 ▪ 장기: 6개월 과정	
교육과정		▪ 단기: 산업안전과정, ICT기술영업, 인공지능 서비스기획, 전기설비실무 등 ▪ 장기: 미래형자동차, 지능형에너지설비, 기계시스템, 에너지산업설비 등	
지원 내용	훈련비	▪ 교육비, 실습재료비, 기숙사비 등 전액 지원	
	훈련장려금	▪ 요건: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단위기간 출석률 = $\frac{\text{단위기간 출석(인정)일수}}{\text{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 \times 100$ ▪ 지급액: 월 11만 6천원 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월 25만원 限) ① 기본장려금(교통비) 월 5만원 限 - 출석일수×2,500원 ② 추가장려금(훈련수당) 월 6만 6천원 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0만원 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출석일수×10,000원 (월 20만원 상한)	
		그 외 훈련생	
		출석일수×3,300원 (월 66,000원 상한)	

〈 차질없는 교육훈련 진행을 위한 면밀한 준비 필요 〉

신중년특화과정(단기)은 2025년도에 1,45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신중년특화과정(훈련비) 19억 3,300만원, 훈련장려금이 2억 8,476만원 편성되었으나,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4,700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신중년특화과정(훈련비)이 36억 5,700만원, 훈련장려금이 6억 1,534만원 증액 편성됨.

[신중년특화과정(단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산출 내역]

구 분		목표인원	산출 단가
훈련비	당 초	1,450명	19억 3,300만원 = 1,450명×1.333백만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150명 (+4,700명)	55억 8,700만원 (+36억 5,700만원) = 1,450명×1.333백만원 +4,700명×0.778백만원
훈련장려금	당 초	1,450명	2억 8,476만원 = $\frac{1,450\text{명}}{\text{훈련인원}} \times \frac{3\text{개월}}{\text{교육기간}} \times \frac{116\text{천원}}{\text{훈련장려금액}} \times \frac{87.1\%}{\text{수료율}} \times \frac{64.79\%}{\text{지급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150명 (+4,700명)	9억 1만원 (+6억 1,534만원) = $\frac{1,450\text{명}}{\text{훈련인원}} \times \frac{3\text{개월}}{\text{교육기간}} \times \frac{116\text{천원}}{\text{훈련장려금액}} \times \frac{87.1\%}{\text{수료율}} \times \frac{64.79\%}{\text{지급률}}$ + $\frac{4,700\text{명}}{\text{훈련인원}} \times \frac{2\text{개월}}{\text{교육기간}} \times \frac{116\text{천원}}{\text{훈련장려금액}} \times \frac{87.1\%}{\text{수료율}} \times \frac{64.79\%}{\text{지급률}}$

*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평균 240시간 3개월간의 훈련과정을 제공할 계획이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이보다 더 짧은 평균 140시간 1~2개월의 훈련과정을 공급할 계획임.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훈련 기간을 단축한 이유에 대해, 장기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기술력 향상을 통해 이·전직을 준비하려는 신중년의 단기과정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함.

목표 훈련 인원 증대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세부과 등으로 경기 악화가 예상되고, 950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법정 은퇴기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역량 강화 및 이·전직 지원을 위해 캠퍼스별 추가로 수용 가능한 훈련 인원 4,700명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함.

다음 두 표와 같이 은퇴를 앞둔 50세 이상의 훈련생이 전체 훈련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2~2024년 동안 78.1%, 76.3%, 77.4%로 매년 70% 이상이라는 점과 신중년특화과정의 경쟁률이 같은 기간 2.9:1, 2.3:1, 2.7:1로 매년 2:1 이상이라는 점에서 훈련 인원 증대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봄.

[2022~2024년 신중년특화과정의 연령 분포]

(단위: 명, %)

연령대	2022년		2023년		2024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40~44	208	8.3	264	10.2	266	10.1
45~49	342	13.6	349	13.5	331	12.5
50세 이상	1,962	78.1	1,975	76.3	2,043	77.4
50~54	457	18.2	512	19.8	587	22.2
55~59	521	20.7	537	20.7	554	21.0
60세 이상	984	39.2	926	35.8	902	34.2
전체	2,512	100	2,588	100	2,640	100

* 자료: 고용노동부

[2022~2024년 신중년특화과정의 캠퍼스별 경쟁률]

(단위: 명, %)

연도 구분 캠퍼스	2022			2023			2024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전체	2,500	5,236	2.9:1	2,500	5,701	2.3:1	2,550	6,751	2.7:1
서울정수	180	459	2.3:1	200	434	2.2:1	250	760	3:1
서울강서	240	830	3.5:1	220	736	3.3:1	220	979	4.5:1
성남	170	362	2.1:1	130	399	3.1:1	130	470	3.6:1

제주	40	124	3.1:1	40	145	3.6:1	40	152	3.8:1
인천	80	178	2.1:1	80	195	2.4:1	80	220	2.8:1
남인천	180	381	2.1:1	180	522	2.9:1	160	477	3:1
화성	90	178	2:1	90	227	2.5:1	110	298	2.7:1
춘천	40	54	1.4:1	60	125	2.1:1	60	153	2.6:1
원주	40	92	2.3:1	40	55	1.4:1	40	73	1.8:1
강릉	70	182	2.6:1	70	145	2.1:1	70	197	2.8:1
대전	100	194	1.9:1	150	230	1.5:1	150	354	2.4:1
청주	40	171	4.3:1	40	140	3.5:1	40	210	5.3:1
아산	40	58	1.5:1	40	66	1.7:1	40	57	1.4:1
충남	50	91	1.8:1	50	80	1.6:1	50	122	2.4:1
충주	20	37	1.9:1	40	103	2.6:1	40	95	2.4:1
광주	60	88	1.5:1	60	139	2.3:1	60	168	2.8:1
전북	40	64	1.6:1	40	56	1.4:1	40	87	2.2:1
전남	50	60	1.2:1	50	83	1.7:1	50	64	1.3:1
익산	90	117	1.3:1	90	147	1.6:1	90	175	1.9:1
순천	70	110	1.6:1	70	114	1.6:1	70	137	2:1
대구	50	74	1.5:1	50	79	1.6:1	50	110	2.2:1
구미	60	97	1.6:1	60	122	2:1	60	134	2.2:1
남대	40	64	1.6:1	40	68	1.7:1	40	71	1.8:1
포항	40	75	1.9:1	40	78	2:1	40	103	2.6:1
영주	40	69	1.7:1	40	51	1.3:1	40	59	1.5:1
영남융합기술	50	89	1.8:1	50	105	2.1:1	50	111	2.2:1
창원	60	137	2.3:1	80	204	2.6:1	80	165	2.1:1
부산	60	172	2.9:1	60	243	4.1:1	60	136	2.3:1
울산	150	219	1.5:1	150	228	1.5:1	150	262	1.7:1
동부산	50	104	2.1:1	50	141	2.8:1	50	120	2.4:1
진주	60	100	1.7:1	40	91	2.3:1	40	75	1.9:1
바이오	40	34	0.8:1	20	27	1.4:1	20	29	1.5:1
항공	40	63	1.6:1	40	82	2.1:1	20	30	1.5:1
반도체	20	23	1.2:1	20	26	1.3:1	40	81	2:1
로봇	-	-	-	-	-	-	20	17	0.9:1

*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고용노동부는 면밀한 준비를 통해 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전국 캠퍼스별로 운영할 수 있는 훈련과정과 수용 가능한 훈련 규모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추가 과정을 개설하겠다는 입장임.

그런데 신중년특화과정은 이론이 아닌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이므로 하나의 교육과정에 수용할 수 있는 훈련생의 규모가 제한되어 있고, 실제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라 추가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 기간은 7개월 남짓에 불과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존 1,450명 외에 현행 모집 인원의 3배 수준인 4,700명의 훈련생을 추가로 교육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교수진 확보, 훈련장소·장비 확충 및 훈련생 모집 등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겠음.

[노동정책실]

(1) 대지급금 지급(임금채권보장기금, 3051-300)

< 사업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역 >

‘대지급금 지급’(1998년~, 직접, 출연) 사업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지급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본예산 5,293억 4,600만원 대비 818억 5,100만원(15.5%) 증액된 6,111억 9,7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대지급금 지급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액		증감 (B-A)	(B-A)/A
	당초	집행액	당초 (A)	제1회 변경안(B)		
■ 대지급금 지급	474,733	727,203	529,346	611,197	81,851	15.5
· 대지급금 지급	472,550	724,207	526,403	608,254	81,851	15.5
· 채권관리비용	2,183	2,992	2,943	2,943	-	-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간이대지급금 818억 5,1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함. 이는 임금체불 증가 추세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수요 증가로 2025년 1분기에 간이대지급금 1,587억 5,100만원(32.8%)을 기집행하여, 해당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예산 소요

를 재추계한 결과 예상되는 연간 간이대지급금 지급 소요액이 5,659억 8,700만원⁷⁸⁾임에 따라 2025년 당초 계획액 4,841억 3,600만원보다 부족한 818억 5,1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①법원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기업의 파산 또는 도산을 인정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과 ②기업의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확인서를 받아 청구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됨.

[대지급금 제도 개요]

구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재직자
지급 사유	▶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 지방관서의 도산등사실 인정		▶ 법원의 확정판결 ▶ 지방관서의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 확인	
지급 요건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파산·회생·도산인정 신청일 등		▶ (확정판결)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 (체불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일용근로자 제외) ②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확

78) 2025년 연간 예상 지급 근로자수 109,308명*, 1인당 단가 5,179,913원(최근 3년 평균단가)**

* (27,328명(2025년 3월 지급 근로자수) ÷ 3개월) × 12개월

** 최근 3년 단가: (2024년) 5,540,666원, (2023년) 5,129,012원 (2022년) 4,864,060원

→ 연간 지급 예상액: 565,987백만원(109,308명 × 5,179,913원)

			인서의 경우) 제기
사업 주 기 준	① 산재보험 적용 사업		
	②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②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③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③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등 확인	
지급 범 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 한	최대 2,100만원 (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총 1,000만원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700만원
청 구 기 한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횟 수 제 한	-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 자료: 고용노동부

〈 대지급금 지급 이후 기금 재정건전성 고려 필요 〉

2019년부터 2024년의 임금체불액 규모와 대지급금 지급 추이를 살펴보면,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 7,217억원에서 2024년 2조 448억원으로 3,231억원(18.8%) 증가하였고, 대지급금 지급액은 2019년 4,599억원에서 2024년 7,242억원으로 2,643억원(57.5%) 증가하였음.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 등으로 임금체불액이 급증하며 대지급금 지출액도 큰 폭으로 증가한 데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임.

[2019년 ~ 2024년 체불규모 및 대지급금 지급 추이]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임금체불액	1,721,703	1,583,014	1,350,452	1,347,209	1,784,530	2,044,848
대지급금 지급액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4,207
도산대지급금	168,789	109,975	79,360	36,576	39,635	54,828
간이대지급금	291,090	469,715	467,210	500,288	647,271	669,379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미 관세정책 여파 등에 따른 내수 부진 지속 및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규모 증가가 우려되고,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에 비해 지급 수요가 증가하여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이 크므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임금체불액 및 대지급금 지급액의 추이를 볼 때, 고용노동부의 설명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한 계획액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대지급금 지급은 법정의무지출에 해당되고, 임금체불액이 급증한 2023년 이후 대지급금 지급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2023년 1,277억 7,300만원, 2024년 2,516억 5,700만원이 자체변경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되었음을 고려하면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한 동 사업 계획액 증액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23~2024년 대지급금 지급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3.10.26.)	대지급금 지급	310	04	127,773	금리인상의 영향과 소비심리 위축, 건설경기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사정 악화로 체불신고액 증가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증가로 소요재원 마련
자체변경 (24.6.19.)	대지급금 지급	310	04	221,635	임금채불 증가 등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수요 증가
자체변경 (24.11.15.)	대지급금 지급	310	04	30,022	임금채불 증가 등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수요 증가

그런데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대지급금 지급 증액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818억 5,100만원을 감액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금의 여유자금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을 고려하면 추후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기금 적립금은 2019년 9,588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4년 3,473억원으로 감소(△63.8%)하였는데 이는 대지급금 지출액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었던 것에 기인함. 이러한 기금의 상황을 고려하여,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계획에는 자금 조달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전입금 570억원이 수입액으로 편성되어 있음.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 지출 및 적립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입(A)	488,392	515,629	523,876	565,385	617,255	663,021
지출(B)	519,153	640,374	627,414	600,342	792,305	836,242
사업비지출	506,251	627,195	613,715	584,138	773,028	818,023
대지급금 지급액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7,198
수지차 (A-B)	△30,761	△124,745	△103,538	△34,957	△175,050	△173,221
적립금	958,777	834,032	730,494	695,537	520,487	347,266
여유자금	753,168	629,067	626,307	590,558	416,886	292,690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	2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
한국은행 예치금	5,609	4,965	4,188	4,980	3,601	4,576

주1) 적립금 = 여유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한국은행 예치금

주2)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대지급금 환수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총수입의 주요한 수입원에 해당하는데, 대지급금 환수 추이를 보면, 최근 누적 대지급금 환수율은 30% 내외로 지속적으로 하락 중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지급금 지급액의 증가에도 환수율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장기적인 기금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대지급금 환수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당해연도 대지급금지급분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4,207
당해연도 대지급금환수분	114,216	122,483	148,248	153,240	148,132	158,228
누적 대지급금지급분(A)	4,574,052	5,153,742	5,700,313	6,237,177	6,924,083	7,648,290
누적 대지급금환수분(B)	1,567,381	1,689,864	1,838,112	1,991,353	2,139,485	2,297,713
누적 환수율(B/A)	34.3	32.8	32.2	31.9	30.9	30.0

*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 사업의 증액을 통해 증가 추세인 대지급금 수요를 충당하면서도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변제금 미납사업주 재산 발굴 및 추심강화·신용제재 등을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생활안정자금(용자)(근로복지진흥기금, 3062-306)

< 사업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역 >

‘생활안정자금(용자)’(1996년~, 용자)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필수자금 용자를 통해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용자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본예산 914억 6,200만원 대비 148억 8,000만원(16.3%) 증액된 1,063억 4,2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생활안정자금(용자)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액		증감 (B-A)	(B-A)/A
	당초	집행액	당초 (A)	제1회 변경안(B)		
■ 생활안정자금(용자)	88,462	118,462	91,462	106,342	14,880	16.3
· 생활안정자금(용자)	88,462	98,286	88,462	103,342	14,880	16.8
·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	-	3,000	3,000	-	-

* 자료: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비정규직, 특고, 1인 자영업자 포함)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혼례비, 의료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총 6종의 용자가 가능함.

각 용자의 금리는 연 1.5%(신용보증료 0.9% 별도)로, 최대 2,000만

월까지 용자가 가능하며, 지원 대상의 소득요건은 월평균소득이 252만 이하(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비적용)임.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 개요]

구 분		대상 및 조건
용 자 대 상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노부모부양비 ⑤자녀양육비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의 1/2('25년 252만 원) 이하 * 일용직은 소득요건 비적용
	⑥소액생계비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휴업·휴직(경영상 이유, 개인 사정), 사업 구조상 이유(계절 사업, 공공근로)로 용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의 1/2('25년 252만 원) 이하 * 일용직은 소득요건 비적용
용 자 한 도	①의료비 ③장례비	• 1,000만원
	②혼례비	• 1,250만원
	④노부모부양비	• 2천만원 한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00만원
	⑤자녀양육비	• 2천만원 한도 내 자녀 1인당 500만원(7세미만 자녀)
	⑥소액생계비	• 200만원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u>2,000만원 한도</u>	
금리	• 연 1.5% (신용보증료 연 0.9%)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자료: 고용노동부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 국회 확정(2024년 12월 10일) 이후 2024년 12월 26일 ① 자녀학자금 용자 폐지 ② 기존 부모요양비 용자의 '노부모부양비' 용자로의 전환 및 용자 한도 상향(1천만원→2천만원) ③ 자녀양육비 용자 한도 상향(1천만원→2천만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고시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하였고 2025년 1월 6일 용자 내용을 변경하였음.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 규모의 확대를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데, 148억 8,000만원의 사업비 증액을 통해 2025년 2~3월 용자지원 평균단가인 620만원⁷⁹⁾⁸⁰⁾ 기준 약 2,400명에 대한 추가 용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대위변제 규모를 고려한 내실있는 용자 집행 필요 〉

연도별·종목별 용자 집행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을 통해 평균 29,826명의 근로자가 1,714억 500만원의 지원을 받았음. 2024년의 경우, 총 20,306명의 근로자가 1,182억 3,400만원의 용자 지원을 받았음.

[2020~2024년 용자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31,743	206,647	24,801	143,946	41,639	223,170	30,639	165,030	20,306	118,234
의료비	5,702	23,862	4,571	18,469	4,529	17,987	5,966	21,291	3,688	13,495
혼례비	5,387	65,285	3,578	43,236	3,493	42,342	4,327	52,772	4,077	49,872
장례비	442	4,161	279	2,570	292	2,621	355	3,220	196	1,751

79) 620만원=2025년 2~3월 지원액 173억 2,300만원 ÷ 지원인원 2,816명

80) 고용노동부는 2024.5월 사업비 조기 소진으로 예산을 증액(300억원, 2024.7월)하고 월별 분할 운영하였으나, 연내 용자 수요 대비 예산부족으로 접수를 하지 못한 용자신청 건이 2025년 사업개시월인 1월에 집중되며 실적에 극단적인 변동 발생하여 2025.1월 실적은 평균단가 산정에서 제외하고 2~3월(2개월) 실적을 기준으로 평균단가를 산정하였다고 설명함.(2025.1월 지원실적 17,550백만원, 2,999명)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부모 요양비	2,637	12,410	1,892	8,843	1,894	8,684	2,393	10,593	1,451	6,274
자녀 학자금	6,244	30,633	4,100	19,883	3,915	18,790	4,985	23,655	3,359	15,870
자녀 양육비	-	-	6,022	29,806	7,233	35,331	9,864	46,677	6,129	28,094
임금감소 생계비	3,212	28,343	1,011	8,715	329	1,457	439	2,355	67	294
소액생계 비	4,259	18,265	2,306	5,242	1,924	3,792	2,310	4,467	1,339	2,584
임금체불 생계비	3,860	23,688	1,042	7,182	-	-	-	-	-	-
생계 지원비	-	-	-	-	18,030	92,166	-	-	-	-

* 고용 취약계층 한시생계비 용자 사업 운영비 2,794백만 원 제외

**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의 경우, 최근 경기 둔화, 내수 침체의 상황에서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에 대한 취약계층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2025년 3월 말 기준 당초 계획액 914억 6,200만원의 39.0%인 356억 8,300만원이 기집행되었음.

[2025년 3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용자) 종목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 부양비	자녀 양육비	소액 생계비	합계
인원	1,260	1,115	62	618	2,254	336	5,945
금액	5,974	13,575	550	2,825	12,105	654	35,683

* 자료: 고용노동부

이러한 용자의 집행현황을 볼 때,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저소득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용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한 사업비 증액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은 취약계층 생계지원의 일환으로 최근 4개년(2021~2024년) 동안 매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이 이루어져, 4년 평균 375억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최소 1,000억원 상당의 용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집행되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한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2021~2024년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목	세목	금액	계획수정 사유
자체변경 (‘21.1.12.)	용자금	기타민간 용자금	20,000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용자확대로 생계보호 강화
국회의결 (‘21.3.25.)	용자금	기타민간 용자금	50,000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상황 악화로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규모 확대를 통해 생계안정 지원 강화
자체변경 (‘22.1.28.)	용자금	기타민간 용자금	△2,794	용자사업 증가에 따른 사업수행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증액을 위한 용자금 감액

자체변경 (‘22.8.9.)	융자금	기타민간 융자금	25,000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근로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생활안정 지원 강화
자체변경 (‘22.12.8.)	융자금	기타민간 융자금	7,799	시중 금리인상 등 지속적 경제악화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생활안정 지원 강화
자체변경 (‘23.9.27.)	융자금	기타민간 융자금	20,000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자체변경 (‘24.7.17.)	융자금	기타민간 융자금	30,000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여파에 따른 경기회복세 둔화로 저소득 근로자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확대에 따라 대위변제 건수 및 금액이 증가 추세임을 고려하여, 내실있는 융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2019년 생활안정자금(융자)의 대위변제가 3,234건으로 131억 1,900만원의 대위변제금이 지출되었던 것에 비해, 2020년 이후의 융자 사업 확대 영향으로 2023년 대위변제 건수는 4,143건으로 183억 4,600만원의 대위변제금이 지출되었고, 2024년의 경우 3,876건의 대위변제에 대한 163억 100만원의 대위변제금 지출이 이루어졌음.

[2019~2024년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위변제 현황]

(단위: 백만원, 건,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대위변제	건수	3,234	2,483	2,488	3,696	4,143	3,876
	금액	13,119	10,221	13,176	17,432	18,346	16,301

* 자료: 고용노동부

융자 부실로 인한 근로복지공단의 대위변제 규모의 증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과도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한 사업비 증액과 동시에 내실있는 융자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신용보증대위변제(근로복지진흥기금, 3064-308)

< 사업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역 >

‘신용보증대위변제’(2002년~, 직접)는 보증·담보 여력이 낮은 취약 계층 등에 대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금융회사를 통한 용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득격차 해소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⁸¹⁾ 및 제26조⁸²⁾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 2002년부터 수행하고 있음.

동 사업의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본예산 316억 5,900만원 대비 329억 5,200만원(104.1%) 증액된 646억 1,100만원이 편성됨.

81)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용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용자사업 및 보증대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82) 「근로복지기본법」 제26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용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은 같은 조의 계약 내용에 정하여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계약 내용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그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받은 금융회사 등은 그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 공단을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025년도 신용보증대위변제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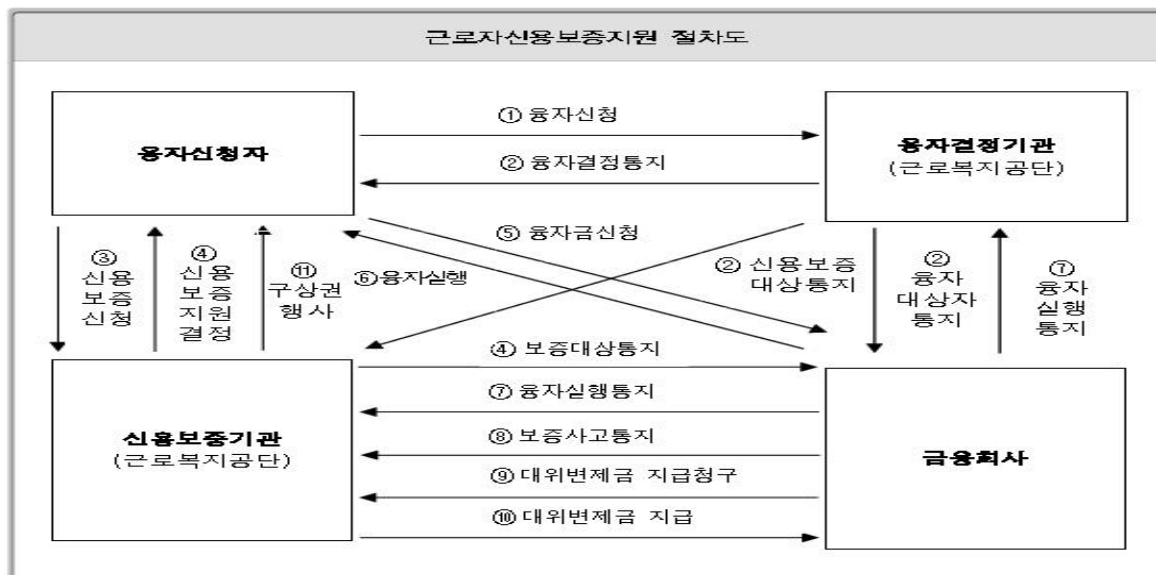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액		증감 (B-A)	(B-A)/A
	당초	집행액	당초 (A)	제1회 변경안(B)		
■ 신용보증대위변제	30,195	30,195	31,659	64,611	32,952	104.1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에서 고용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에 따라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금융회사를 통한 용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의 신용보증을 통한 용자 실행 후, 용자를 실행한 금융기관에서 용자금 회수가 곤란하여 원리금 연체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됨.

[신용보증지원 절차도]



*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을 통해 i)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ii)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에 따른 임금등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용자, iii)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학자금 융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⁸³⁾ 신용보증지원 한도는 1명당 2,000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1인당 3,000만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용보증 한도액은 2025.3.1.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1인당 3,000만원으로 한시 상향)으로 제한하고 있음.⁸⁴⁾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 취약계층의 정상 금융 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 계획액을 당초 계획액 대비 329억 5,2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이는 2024년 12월말 기준 연체액 중 2025년 중 대위변제 청구기한이 도래하는 금액(579억 200만원), 2024년 미지급액(188억 900만원) 중 신용회복 지원

83)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8조(보증대상 융자사업)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 및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사업
3. 「고용보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학자금 융자사업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융자사업,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5. 삭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사업
7.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8.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9.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84)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0조(보증한도) ① 신용보증지원 한도액은 각 융자사업 관련 규정에 따른 융자사업 한도액으로 하되, 1명당 보증한도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1명당 보증한도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위변제 예방액(130억 6,100만원)⁸⁵⁾을 제외했을 때, 총 636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5년 동세부사업 중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을 위한 당초 계획액은 306억 9,800만원⁸⁶⁾으로 329억 5,200만원이 부족한바, 이를 충당하기 위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85) $2,721\text{건}(2024\text{년 사고해제건수 } 2,284 \times \text{노력도}15\% \times \text{조정 계수 } 3.6\%) \times 4.8\text{백만원}$ (2024년 건당 평균대위변제액*) = 13,061백만원

* 29,555백만원('24년 대위변제액) ÷ 6,138건(2024년 대위변제건수)

86) 2025년 당초 계획액은 반환금 및 손실금(710-03목)으로 신용보증대위변제 306억 9,800만원, 신용보증료환급 9억 6,100만원이 편성되어있음.

〈 신용보증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회수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을 통해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근로자는 2019년 24,057명에서 2024년 36,608명으로 52.2% 증가하였음. 신용보증지원액은 2019년 1,503억원 상당이었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융자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2023년까지 3,000억원 내외로 나타났고, 2024년은 1,929억원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이 이루어졌음.

[연도별 신용보증지원 실적 및 대위변제액]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신용보증지원 인원	24,057	50,322	49,614	54,704	51,289	36,608
신용보증지원액	150,258	322,090	352,157	309,078	306,807	192,945

*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회사 등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데,⁸⁷⁾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융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보증지원 후 원리금 연체 등의 발생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위변제의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임.

87) 「근로복지기본법」 제26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은 같은 조의 계약 내용에 정하여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계약 내용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위변제건수는 2019년 5,080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4년 6,138건으로 증가(20.8%)하였고, 대위변제규모도 증가하여 2019년 191억 4,600만원에서 2024년 295억 5,500만원으로 증가(54.4%)하였음.

[연도별 대위변제액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대위변제액 (당해연도)	19,146	15,451	18,418	27,711	33,035	29,555
대위변제건수 (당해연도)	5,080	3,827	3,983	5,415	6,795	6,138
누적 대위변제액	199,698	215,149	233,567	261,278	294,313	323,869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0년 이후 증가되었던 용자 규모와 최근의 고금리로 인한 연체율 증가로 인해, 2024년 12월말 기준 금융회사에서 회신한 연체액 규모를 감안하여 신용보증대위변제 추가 소요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상의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의 대위변제 건수·금액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한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과 관련하여, 대위변제금 확대에 따른 구상채권의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근로복지공단은 대위변제금을 지급한 이후 용자 신청자에게 구상권

을 행사하여 변제금을 납부받고 있음. 그러나 2019~2024년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회수율을 살펴보면, 누적 회수율이 2019년 38.3%에서 2024년 35.2%로 감소($\Delta 3.1\%p$)하고 있고, 용자규모가 증가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누적 회수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연도별 구상채권 회수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회수금액 (당해연도)	6,818	6,908	7,147	7,756	7,320	8,173
누적 회수액	76,521	83,429	90,576	98,332	105,652	113,825
누적 회수율	38.3	38.8	38.8	37.6	35.9	35.2

* 자료: 고용노동부

통상 용자 실행 이후 대위변제의 발생까지는 시차가 존재함을 고려한다면, 2020년 이후 이루어진 용자 규모 확대에 따라 향후 대위변제금 지급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의 실효성 확대 및 안정적인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해 구상채권 회수율의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를 추진하는 동시에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⁸⁸⁾

[산업안전보건본부]

(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060-350)

< 사업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역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1987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⁸⁹⁾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을 대상으로⁹⁰⁾ 다음과 같이 의료·혼례·장례에 필요한 긴급자금과 차량구입·주택임차 등에 필요한 자금을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저금리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현 계획액 142억 9,900만원 대비 65억 6,000만원(45.9%) 증액된 208억 5,900만원이 편성됨.

88)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구상채권 집중정리기간을 연2회 운영하면서 고액채권 회수·기관별 회수율 실적 평가·집행권원 확보 및 특수채권 실효 관리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으로, 채무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으로 자발적 변제율 제고, 외부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 개인회생)에 대한 적극적 안내를 시행하고 있으며, 회보재산 보전조치 후 근로여부 등 조사를 강화하는 보전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누적 회수율이 저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89) 제92조(근로복지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가.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나.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90)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5,052,353원) 이하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및 유족 등이 해당

[2025년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액		증감 (B-A)	(B-A)/A
	당초	수정	계획액 (A)	제1회 변경안(B)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14,299	14,264	14,299	20,859	6,560	45.9

*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용자종류	지원한도액
의료비	1,000만원
혼례비	1,000만원
장례비	1,000만원
취업안정자금	1,000만원
차량구입비	1,500만원
주택이전비	1,500만원
자녀양육비	자녀 1명당 5백만원(가구당 최대 1,000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

〈 기존 용자를 받은 산재근로자와의 형평 문제 등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대처와 사업목표에 충실한 사업 집행 필요 〉

이러한 증액은 지난 1월 관계부처합동으로 확정·발표한 2025년 경제 정책방향 중 민생경제 회복의 일환인 취약 부문 맞춤형 지원 정책 중

노동약자 보호망 지속 확충을 위한 후속조치로,⁹¹⁾ 한시적으로 용자 이율을 기존 1.25%에서 1.0%로 인하하고 13세 미만 자녀 양육 비용 신설하면서, 용자한도를 가구 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예상되는 추가 비용이 반영된 결과임.

해당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소득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좀더 용이하고 폭넓게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10개월이라는⁹²⁾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용자 이율을 인하하고(1.25%→1.0%) 용자 한도를 상향(2,000만원→3,000만원)하는 것은 다음의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바,

①이율 측면에서 기존용자를 받은 산재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②기존 용자사업 시행과정에서 용자 한도 상향에 대한 뚜렷한 수요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술적 근거 없이 기존 용자 한도액(2,00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0만원을 상향하는 등 단순히 한도와 이율의 조정을 통하여 산재근로자 등으로 하여금 더 많은 용자를 받도록 장려하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소비 촉진이라는 경제 효과 외 ‘산재근로자 생활안정 증진’이라는 본연의 정책목표 달성에 적절하게 설계된 정책인지 여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91) 「2025년 경제정책방향」(2025. 1. 2, 관계부처합동), p.26

92) 용자 이율 인하 및 한도상향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여 기금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이라는 사업목표가 오롯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V.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임이자 위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1,103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싱크홀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6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산불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AI 산불카메라, 기계화 진화장비,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추가 도입 등에 115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특성에 맞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산불진화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소위원회는 일반회계 등 2개 회계에서 94억 2,700만원을 증액하고, 고용보험기금 등 3개 기금에서 905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지급금 지급 사업은 경기 악화에 따라 올해에도 임금채불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818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미국 관세 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의 사업장과 근로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6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피해가 큰 업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사업집행지침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Ⅵ. 심사결과

1. 환경부 소관

수정가결

2. 고용노동부 소관

수정가결

Ⅶ.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Ⅷ. 부대의견

1. 환경부 소관

- 환경부는 국립공원 헬기도입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적시성 있는 도입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한다.
- 환경부는 국립공원 고성능산불진화차량확충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 차량이 적기에 구입 및 배치·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의 주체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한다.
-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특성에 맞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산불진화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환경부는 지반침하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별도로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위험이 높은 곳부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3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이외에도 적기 정비와 정밀조사 사업에 대해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정부의 보급목표 실현을 위해 수소버스 공차운행 연료비 지원을 2026년도 예산에 충분히 확대하여 편성하도록 추진한다.
-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 등 환경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

2. 고용노동부 소관

- 고용노동부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피해가 큰 업종,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사업집행지침을 수립한다.
- 고용노동부는 경북 산불 피해 사업장 및 근로자 수를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한다.
-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5년째 수당 동결로 제대로 된 지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향후 시범사업은 증액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2026년도 본사업 실시를 검토한다.
-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 종료 이후에도 청년 근로자가 근속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고용노동부는 체불 근로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을 마련하여 대지급금의 보장 범위와 지급 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 고용노동부는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임 비용 산정 기준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IX. 별 첨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표

I.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총괄표

1.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회 계 명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일반회계	600	-	60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환경개선특별회계	32,974	-	32,97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6,800	-	76,800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9,127	-	9,12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00	-	300
	합 계		119,801	-	119,801

II.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내역

가. 환경부

1.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A)	증감액 (B)	추경안 (C=A+B)				
1	국가하천정비 (5331-301)	679,400	-	679,400	679,700	300	○ 문경시 영순면 이목리 일원의 낙동강 이목지구 통합 하천 정비사업(치수·이수·수질·수생태 관리) 실시를 위해 3억원 증액	
2	수자원종합연구 (5131-308)	3,188	-	3,188	3,488	300	○ 안동댐 수몰로 단절된 도로(도산면 동부리 ~ 예안면 부포리)를 연결하기 위한 안동댐 주변지역 교통환경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3억원 증액	

-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
 (4)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 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A)	증감액 (B)	추경안 (C=A+B)				
1	3개댐 (안동 양하성) 대상 산불로 인한 물환경 영향 조사 용역 (신규)	-	-	-	500	500	○ 경북 안동시 3개댐 대상 산불로 인한 물환경 영향 조사 용역 5억원 증액	
2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지정관리 (1832-305)	8,042	-	8,042	9,126	1,084	○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상생형 일자리 창출 및 산불 예방, 단속 등 자연생태계보전 실현을 위한 10억 8,400만원 증액	
3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1633-301)	48,953	-	48,953	66,605	17,652	○ 내역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315억 3,600만원)사업의 경우 2025년 7월부터 기존 4·5종 사업장*에 대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사업장 지원을 위해 176억 5,200만원 증액 * 4·5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10톤 미만인 사업장(4종: 2~10톤 미만, 5종: 2톤 미만)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A)	증감액 (B)	추경안 (C=A+B)				
4	국립공원공단 출연 (1831-306)	222,728	7,650	230,378	241,913	7,200	○ 연기, 불꽃 등을 자동인식하고 상황실로 즉시 알림이 가능한 AI산불카메라 확대도입을 위하여 72억원 증액 * 72억원 = 144대 × 5천만원	
						3,585	○ 산불진화 지원을 위하여 기계화진화장비, 열화상감지 드론, 웨어러블, 연기투시렌턴, 스마트헬멧, 유지관리 비로 35억 8,500만원 증액	
						750	○ 대규모 산불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고성능산불진화차량 2대 추가 도입을 위한 7억 5,000만원 증액	
5	생물자원 보전종합대책 (1831-304)	1,450	-	1,450	3,620	2,170	○ 낙동강 토속어종 생물자원관 건립 및 낙동강 생태하천 조성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통한 경북 의성 지역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1억 7,000만원 증액	
6	국립생물자원관 운영 (1844-303)	7,284	-	7,284	7,317	33	○ 국립생물자원관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3,300만원 증액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지원계정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A)	증감액 (B)	추경안 (C=A+B)				
1	하수관로정비 (1132-312)	1,626,418	55,644	1,682,062	1,758,862	67,600	○ 내역사업 ‘하수관로정비’ 사업(1조 2,950억 6,700만원)에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적기 정비를 위해 676억원 증액	
						9,200	○ 내역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25억 9,400만원)에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우선순위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 비용 92억원 증액	

나. 고용노동부

1.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 원안 유지

2.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본예산	2025 추경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	외국인근로자고용 관리(3051-308)	9,195	9,195	10,295	1,100	○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지역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내역사업인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예산 11억원 증액	
2	고용센터인력지원 (1031-300)	97,719	97,719	100,610	2,891	○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처우개선 권고 이행을 위한 직업상담원 명절상여금 증액과 가족수당 및 민원업무지원비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 28억 9,100만원 증액	
3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1231-300)	885,130	885,130	886,927	1,797	○ 동 사업의 상담업무를 진행하는 무기계약직 상담원들의 연 평균 보수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연 평균 보수의 85% 미만이므로, 인건비 정상화를 위해 17억 9,7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본예산	2025 추경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4	고용노동통계조사(1033-470)	26,699	26,699	27,380	681	○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처우개선 권고 이행을 위한 통계조사관 명절상여금 증액과 가족수당 및 근속수당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 6억 8,100만원 증액	
5	근로조건 개선지원 (3031-302)	10,402	10,402	11,801	1,399	○ 임금채불 피해 구제에 필수적인 권리구제지원팀의 처우 개선·결원 문제 해결인력 충원 등을 위해 내역사업인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사업 예산 13억 9,900만원 증액	
6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7039-310)	1,000	1,000	1,174	174	○ 무료 국선대리인 선임 실적 대비 부족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예산안의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1억 7,400만원 증액	
7	고객상담센터운영 (7931-301)	24,040	24,040	21,125	1,085	○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처우개선 권고 이행을 위해 전화상담원 등에 대한 명절상여금 증액과 가족수당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 10억 8,500만원 증액	

-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
 (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본예산	2025 추경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1135-308)	307,605	307,605	307,905	200	○ 안동, 상주 지역에 공공 직업교육 인프라 구축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 증액	
					100	○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구성원인 외국인력과 다문화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 및 안착을 위한 민생 대책으로 한국어 교육과 맞춤형 직업교육을 병행하는 폴리텍 다솜고 추가 설립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 1억원 증액	

3.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 해당사항 없음

III. 부대의견

가. 환경부(7건)

- 환경부는 국립공원 헬기도입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적시성 있는 도입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한다.
- 환경부는 국립공원 고성능산불진화차량확충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 차량이 적기에 구입 및 배치·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의 주체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한다.
-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특성에 맞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산불진화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환경부는 지반침하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별도로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위험이 높은 곳부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3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이외에도 적기 정비와 정밀조사 사업에 대해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정부의 보급목표 실현을 위해 수소버스 공차운행 연료비 지원을 2026년도 예산에 충분히 확대하여 편성하도록 추진한다.
-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 등 환경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

나. 고용노동부(7건)

- 고용노동부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피해가 큰 업종,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사업집행지침을 수립한다.
- 고용노동부는 경북 산불 피해 사업장 및 근로자 수를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한다.
-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5년째 수당 동결로 제대로 된 지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향후 시범사업은 증액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2026년도 본사업 실시를 검토한다.

-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 종료 이후에도 청년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고용노동부는 체불 근로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을 마련하여 대지급금의 보장 범위와 지급 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 고용노동부는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임 비용 산정 기준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